

발 간 등 록 번 호  
11-1480592-001256-01

알기 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5

#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알기 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5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알기 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5

##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알기 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5

##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

발행처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발행일 : 2017년 11월 30일

기 획 : 김동구, 오경희, 오현경, 강지혜, 김윤정

작 성 : 허 인, 전정화, 정소영, 김두수, 이준표,  
남미화, 피용호

디자인 : 디자인 여백

인 쇄 : 디자인 여백

## 발간사

“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생물자원은 우리의 힘 ”



요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생물학적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바이오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재료인 생물자원은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과 결합하여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Green Gold’로 불리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2010년 10월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14.10.12.) 생물자원 보유국의 권리를 인정하는 생물주권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나고야의정서는 어느 국가가 보유한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때, 생물자원 보유국과 이용국이 그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적 약속입니다.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는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인식되었던 생물자원에 개별국가의 권리가 인정됨으로써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의약, 식품, 화장품 등 대부분의 바이오산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생물자원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철저한 준비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각국은 의정서 체제에 따른 이행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 및 가동하는 가운데, 다양한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적응해야하는 국내 바이오산업체, 연구기관 및 학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ABS 정보서비스센터(ABS HelpDesk)를 운영해 왔으며, 수차례 관련 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21개 국가의 나고야 의정서 관련 대응 추진 현황 및 운영체계를 모니터링 하고, 합법적이고 용이한 해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알기 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5: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내서가 국내 관련 산업계 및 관련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장  
백운석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 Contents

### 06 Intro 들어가기 전에

#### 목차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	08
나고야의정서 주요용어	09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웹사이트	10
ABSCH(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 이용하기	11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동향	12
안내서의 구성	13
나고야의정서 21개 당사국 주요 정보 정리	14

### 16 Europe 유럽

EU	18
네덜란드	22
덴마크	26
독일	30
스페인	34
슬로바키아	44
영국	48
핀란드	52
헝가리	56

### 60 Asia 아시아

아세안공동체	62
라오스	66
말레이시아	70
미얀마	77
베트남	81
부탄	101
인도	105
인도네시아	115
일본	119
중국	123
캄보디아	127
필리핀	131



# 들어가기 전에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 .....	08
나고야의정서 주요용어 .....	09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웹사이트 .....	10
ABSCH(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 이용하기 .....	11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동향 .....	12
안내서의 구성 .....	13
나고야의정서 21개 당사국 주요 정보 정리 .....	14

# Intro



##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

### ● 생물다양성협약은

-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자원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단일 종(Species) 내의 유전적 다양성으로부터 종의 다양성,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종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까지도 포함하는 개념
- 1980년대 후반부터 자연보호 측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 경제, 문화, 제도 등 사회과학적 관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이해되기 시작
- 1992년 5월 22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생물다양성이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현저하게 감소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②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The sustainable use of the components of biological diversity), ③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를 그 목적으로 함
- 1993년 12월 29일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에는 2017년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국 및 유럽연합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에 비준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음

### ● 나고야의정서는

- 명칭 :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ABS) to the CBD)
- 연혁 :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보충협정으로서 2010년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14년 10월 12일 발효
- 목적 : 1993년 12월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의 세가지 목표 중 하나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투명한 법적 기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법적 확실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함
- 내용 : 유전자원을 취득하려는 이용자에게 예측가능한 절차 및 조건의 설치를 알리고, 또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으로부터는 유전자원을 반출할 때에 이익공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

## 나고야의정서 주요용어

### ABS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Access and Benefit-Sharing

- 접근(Access) : 생물유전자원의 연구, 개발 등 이용을 위한 사전 활동
- 이익공유(Benefit-sharing) : 이익공유는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자간에 체결한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실시하며, 그 내용으로는 로열티, 접근료와 같은 금전적 이익과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 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

### PIC : 사전통고승인, Prior Informed Consent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기관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MAT : 상호합의조건 Mutually Agreed Term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제공자와 이용자가 상호 합의한 조건을 의미

### NFP : 국가연락기관, National Focal Point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한 절차 정보, 국가책임기관, 관련 토착지역공동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등, AB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기관

### CNA :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국가 ABS 체제에 따라 접근을 결정, 승인, 보증할 임무 및 접근 절차 및 요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 기관

### CP : 점검기관, Checkpoint

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한 정보의 취합, 의무준수 미이행에 대해 대처를 위한 이용자의 정보수집, 유전자원의 이용이나 연구, 개발, 혁신, 사용화 이전 또는 모든 단계에 관한 정보 수집 등, 유전자원 이용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기관

### ABSCH :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CBD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정보공유체계의 일환으로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를 설치하며,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공유와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이 공개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나고야의정서 제14조 제1항)

### IRCC : 국제인정 의무준수인증서,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명시된 유전자원이 제공국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법 및 규제요건이 요구하는 사전통고승인에 의한 것이며, 상호합의조건이 확정된 것임을 나타내는 인증서

### IPLCs : 토착지역공동체,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전통적으로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이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사회

##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웹사이트



### ● 대한민국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http://www.abs.go.kr>)

- 대한민국 및 국외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대한 국내 유전자원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국가연락기관, 책임기관 및 점검기관 업무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



### ● ABSCH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 (<https://absch.cbd.int>)

- 나고야의정서 대응 비준국 현황 제공
- 각 국가별 나고야의정서 대응 관련 정보 제공(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법령,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점검기관 등)
- 나고야의정서 관련 모범관행, 지침, 관련 회의 및 뉴스 등 정보 제공



### ● 세계 생물다양성정보 (<https://www.gbif.org>)

- 세계의 생물다양성 정보에 대하여 개방형 데이터를 제공
- 종자의 발생기록, 색인, 외래종, 보전 및 보호지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 각 생물의 명칭, 국가, 위치, 발생일, 유형상태 등에 대한 개별정보를 제공



### ●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http://www.kbr.go.kr>)

- CHM(Clearing-House Mechanism)
- 국가의 생물다양성 협약 관련 정보 제공
- 생물다양성협약의 의무 이행 및 생물다양성의 보존,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생물다양성 협약,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CBD-CHM), 생물자원 DB, 생태자원 DB 등 관련정보를 제공

## ABSCH(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 이용하기

- ABSCH(<http://absch.cbd.int>)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정보공유 플랫폼이자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도구입니다.
- ABSCH에서는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정보를 각 국가별, 또는 필요한 정보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정보 목록 및 번역	내용
National records 국가 정보	당사국이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 목록
ABS National Focal Points 국가연락기관(NFP)	국가연락기관 및 담당자 정보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국가책임기관(CNA)	국가책임기관 및 담당자 정보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법령, 정책 등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차원의 조치
National Websites and Database 웹사이트 및 데이터베이스 정보	ABS관련 국가 웹사이트 및 데이터베이스 정보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s of Compliance 국제인정 의무준수인증서(IRCC)	유전자원 이용 정보 및 PIC 및 MAT의 절차를 준수하여 설정된 계약에 의거하여 작성된 증명서
Checkpoints 점검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담당자 정보
Checkpoint Communiqués 점검기관 코뮈니케	점검기관에 의해 수집된 정보의 요약
Interim National Reports on Implementation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나고야의정서 제29조에 의한 보고서 관련 정보
Reference records 참고 정보	당사국 외 비당사국, 정부, 국제기구, 토착지역공동체 등의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목록
Virtual Library Records 가상 정보 목록	사용자가 등록한 다양한 정보(인식제고 자료, 일반문서, 사례연구, 역량구축 등) 목록
Capacity-building Initiatives 역량강화 계획	나고야의정서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국가, 국제 수준의 정보 목록
Model Contractual Clauses, Codes of Conduct, Guidelines, Best Practices and/or Standards 표준계약, 행동규약, 지침, 모범관행 등의 정보	나고야의정서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표준계약조항, 행동규약, 지침, 모범관행 등의 정보
Community protocols and procedures and customary laws 공동체 관습법 등	나고야의정서 제12조에 의한 공동체 규약, 절차, 관습법에 대한 정보
SCBD records SCBD 정보	CBD 사무국(CBD Secretariat)에서 발행한 정보 목록
What's New 홈페이지 내 새로운 정보	홈페이지 내 새롭게 등록된 정보 목록
Notifications 공지사항	공지사항
Meetings 국제회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회의 일정
News 뉴스	나고야의정서 관련 새로운 뉴스

##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동향

일반현황	2017년 5월 19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 2017년 8월 17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함께 관련법을 제정, 공포 함	
ABS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8. 17. 시행)</li> <li>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246호, 2017. 8. 17. 시행)</li> <li>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720호, 2017. 11. 27. 시행)</li> </ul>	
ABS 적용대상과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전자원 :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li> <li>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li> </ul>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교부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의 연락</li> <li>환경부 :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의 제공</li> </ul>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C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li> <li>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li> </ul>	
국가점검기관 (Checkpoi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복지부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li> <li>환경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li> <li>해양수산부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li> </ul>	
ABS 관련 내국인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내국인(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의 경우 : 제공국이 대한민국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li> <li>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내국인(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의 경우 :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경우, 제공국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절차준수여부를 국가점검기관 장에게 신고해야함</li> </ul>	
대한민국 ABS 관련정보 문의	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상담신청 ( <a href="http://www.abs.go.kr/kabsch/program/counsel/create.do?cid=42">http://www.abs.go.kr/kabsch/program/counsel/create.do?cid=42</a> )	
관련 사이트	ABS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a href="http://www.law.go.kr">http://www.law.go.kr</a> )
	관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한민국 ABSCH (<a href="http://www.abs.go.kr">http://www.abs.go.kr</a>)</li> <li>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a href="https://www.nibr.go.kr">https://www.nibr.go.kr</a>)</li> <li>환경부 (<a href="https://www.me.go.kr">https://www.me.go.kr</a>)</li> </ul>
	유전자원 관련 DB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a href="http://www.kbr.go.kr">http://www.kbr.go.kr</a>)</li> <li>한반도의 생물다양성 (<a href="https://species.nibr.go.kr">https://species.nibr.go.kr</a>)</li> </ul>

## 안내서의 구성



### 안내서 일반

- 각 국가별로 나고야의정서 관련 간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는 2장 유럽과 3장 아시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장은 한글 '가나다'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체 요약

- 21개 국가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가동향 중 중요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담았습니다.
- 비준국 여부, 나고야의정서 비준/발효일, ABS 법령의 유무, ABS 관련 기타 법령여부, ABS적용대상, 국가책임기관, 국가연락기관, 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BS (관련)법 주요내용

- 국가별로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여 새롭게 제정, 개정된 ABS 법령의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가별로 아직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여 새롭게 제정, 개정된 ABS 법령이 없을 경우, 생물다양성협약에 대응한 법률 또는 국가별 기타 법령에서 ABS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ABS 절차

- 국가별 ABS법령 등에서 지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용자가 유전자원의 접근부터 최종 이용까지의 시간의 흐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해당 자원 이용국에서 접근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국내신고절차를 시간의 흐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제공국이라 할지라도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아 완전한 절차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개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보여줍니다.



### 관련서식

- 각 국가별로 ABS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들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서식들을 번역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보다 상세한 국가별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동향연구 (1차년도)」, 2017'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고야의정서 21개 당사국 주요 정보 정리

번호	국가 (단체)명	나고야 의정서 비준여부	나고야 의정서 비준일	나고야 의정서 발효일	ABS법령 유무	ABS 적용대상
1	EU	○	2014. 5. 16.	2014. 10. 12.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2	네덜란드	○	2016. 8. 19.	2016. 11. 17.	○	유전자원
3	덴마크	○	2014. 5. 1.	2014. 10. 12.	○	유전자원
4	독일	○	2016. 4. 21.	2016. 7. 20.	○	유전자원
5	스페인	○	2014. 6. 3.	2014. 10. 12.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6	슬로바키아	○	2015. 12. 29.	2016. 3. 28.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7	영국	○	2016. 2. 22.	2016. 5. 22.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8	핀란드	○	2016. 6. 3.	2016. 9. 1.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9	헝가리	○	2014. 4. 29.	2014. 10. 12.	○	유전자원
10	ASEAN	대상아님	대상아님	대상아님	×	-
11	라오스	○	2012. 9. 26.	2014. 10. 12.	×	유전자원
12	말레이시아	×	-	-	○	생물자원 및 파생물, 전통지식
13	미얀마	○	2014. 1. 8.	2014. 10. 12.	×	유전자원
14	베트남	○	2014. 4. 23.	2014. 10. 12.	○	유전자원 및 파생물
15	부탄	○	2013. 9. 30.	2014. 10. 12.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파생물
16	인도	○	2012. 10. 9.	2014. 10. 12.	○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17	인도네시아	○	2013. 9. 24.	2014. 10. 12.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18	일본	○	2017. 5. 22.	2017. 8. 20.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19	중국	○	2016. 6. 8.	2016. 9. 6.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파생물
20	캄보디아	○	2015. 1. 19.	2015. 4. 19.	×	유전자원
21	필리핀	○	2015. 9. 29.	2015. 12. 28.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NFP 국가연락기관	CNA 국가책임기관	입장
EU 환경총국	국가별 지정	이용국
유전자원센터	경제부	이용국/제공국
자연청	수자원관리청	이용국/제공국
자연보전 및 경관관리부	독일연방자연보전청	이용국
농림수산식품환경부	농림수산식품환경부 산하 자연환경품질평가국	이용국/제공국
환경부	환경부	이용국
환경식품농촌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규제단속국	이용국
환경연구원	환경연구원, 국립자원연구소	이용국/제공국
농업부	페슈트 주청	이용국/제공국
-	-	제공국
과학기술부, 천연자원환경부	과학기술부, 천연자원환경부	제공국
천연자원환경부 생물다양성산림관리국	유형, 지역별 19개 책임기관 지정	제공국
천연자원환경부, 산림부	천연자원환경부, 산림부	제공국
천연자원환경부	천연자원환경부, 농업농촌발전부	제공국
국가환경위원회, 농업산림부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농업산림부	제공국
환경부	국가생물다양성총국	제공국
환경부	기술 및 연구부	제공국
환경성	환경성 외 4개 기관	이용국
환경보호부	국가환경보호총국	제공국
환경부 국가지속가능개발협의회	환경부 국가지속가능개발협의회	제공국
환경자연자원부	생물유전자원에 관한 기관간위원회	제공국



# 유럽 2



EU .....	18
네덜란드.....	22
덴마크.....	26
독일.....	30
스페인.....	34
슬로바키아.....	44
영국.....	48
핀란드.....	52
헝가리.....	56

# Europe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 01



# EU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4. 5. 16.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4. 10. 12.

ABS 적용대상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입장 유전자원 이용국

국가연락기관/  
연락처 EU환경총국/  
alicja.kozlowska@ec.europa.eu

EU



##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항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4. 5. 16.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4. 10. 12.
생물다양성협약 발효일	1993. 12. 21.
ABS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10월 13일 EU규칙 511/2014를 이행하기 위한 유럽위원회 이행규칙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1866)</li> <li>• 2014년 4월 16일 나고야의정서 이행조치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칙 511/2014 (EU ABS Regulation - REGULATION (EU) No 511/2014)</li> <li>• 유럽위원회 통보: EU규칙 511/2014 적용범위와 주요의무에 관한 지침(Commission notice — Guidance document on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core obligations)</li> </ul> <p>※ EU ABS법령은 유럽 내 EU가입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p>
ABS 적용대상과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원: 실제 또는 잠재적 가치의 유전물질</li> <li>•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원주민 또는 지역공동체가 보유하고, 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이 있고, 유전자원 활용에 적용되는 상호합의(MAT)의 용어로 기술된 전통지식</li> </ul>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EU환경총국(DG Environment)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CNA)	EU차원에서는 없으며 각 회원국 별로 지정됨
담당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락기관 EU 환경총국 담당자 Ms. Alicja Kozlowska</li> <li>• E-mail : alicja.kozlowska@ec.europa.eu</li> <li>• Tel : +32 2 296 7943</li> </ul>
관련사이트	<p>관련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생물다양성전략 2020 관련 사이트 : <a href="http://ec.europa.eu/environment/nature/biodiversity/comm2006/2020.htm">http://ec.europa.eu/environment/nature/biodiversity/comm2006/2020.htm</a></li> <li>• EU자연 및 생물다양성 정보 사이트 : 생물자원관련 법제 및 정책 정보 포함 : <a href="http://ec.europa.eu/environment/nature/index_en.htm">http://ec.europa.eu/environment/nature/index_en.htm</a></li> </ul> <p>유전자원 DB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생물다양성정보 시스템 : <a href="http://biodiversity.europa.eu/bise">http://biodiversity.europa.eu/bise</a></li> <li>• 생물다양성데이터센터 : <a href="https://www.eea.europa.eu/themes/biodiversity/dc">https://www.eea.europa.eu/themes/biodiversity/dc</a></li> <li>• 코페르니쿠스(지구관측을 위한 유럽역량강화 프로그램) : <a href="http://copernicus.eu/">http://copernicus.eu/</a></li> <li>• 지구관측 네트워크 GEO BON : <a href="http://geobon.org/">http://geobon.org/</a></li> <li>• Lifewatch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연구를 위한 유럽 기반) : <a href="http://www.lifewatch.eu/">http://www.lifewatch.eu/</a></li> <li>• EuMon (유럽의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 <a href="http://eumon.ckff.si/index1.php">http://eumon.ckff.si/index1.php</a></li> </ul>

## ABS법 및 지침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EU ABS 이행법률 511/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장(목적, 적용범위, 정의) : 목적, 적용범위, 정의</li> <li>• 제2장 (이용자 의무) : 이용자의 의무, 컬렉션 등록,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연락기관, 모니터링 준수 의무, 모범관행, 이용자 준수 점검, 점검기록, 패널티</li> <li>• 제3장 (최종규정) : 협력, 보완조치, 위원회 절차, 상담, 보고 및 검토, 발효 및 적용</li> </ul> <p>※ EU ABS 이행법률은 EU 회원국이 개별법령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p>
유럽위원회 이행규칙 2015/1866	<p>목적, 수집등록처, 등록처 등재요청 및 위원회로의 등재, 등록된 유전자원의 검사 및 시정조치, 연구자금 제공 단계에서의 적절주의의무 신고, 최종 상품 개발단계에서의 적절주의의무 신고, 정보의 전달, 모범관행 승인을 위한 신청서, 모범관행의 승인 및 승인의 철회, 승인된 모범관행의 추가적인 변경에 대한 정보, 모범관행에서의 결함, 검토, 발효</p> <p>※ 유럽위원회 이행규칙 2015/1866은 EU/511/2014의 이행을 위한 세부규칙으로 수집등록, 이용자의 이행의무준수 감시, 모범관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p>
EU규칙 511/204 적용범위와 주요의무에 관한 지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문 : 법적체계의 개요, 용어의 정의</li> <li>2. 규정의 범위 : 장소적 적용범위(유전자원의 출처), 시간적 적용범위, 물질적 적용범위, 개인적 적용범위, 장소적 적용범위</li> <li>3. 이용자의 의무 : 주의의무, 적용여부 설정, 주의의무의 입증, 토착지역공동체를 통한 유전자원의 취득, 등록된 컬렉션을 통한 유전자원의 취득</li> <li>4. 적절주의의무의 신고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례 : 연구자금 제공단계에서의 적절주의의무 신고, 최종 상품 개발단계에서의 적절주의의무 신고</li> <li>5. 특정한 사안 : 건강 분야, 식품 및 농업분야</li> </ol> <p>별첨 : EU ABS규정 적용가능 조건</p>

※ ABS 법령은 지속적으로 제·개정 될 수 있으며, 최신 법령은 ABSC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BS 절차



- 적용대상 : EU 내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접근’된 유전 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파생물은 사실상 제외됨
- 접근 :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ABS 법제에 따라 취득하는 것, 비당사국의 경우 제외
- 국제인정 의무준수인증서 : 다른 당사국이 발행하는 접근 허가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로서 이를 국내 관할기관에 제시해야 함
- 회원국 국가책임기관 : 점검기관과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음
- 적절주의의무(due diligence) 신고 : 이용자는 연구비 수령 단계 및 최종제품개발단계에서 국내 관할기관에 신고
- 영업 비밀은 보호됨
- 상호합의조건(MAT) :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상의 약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등 구체적인 조건을 정함
-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TK) : 특히 토착지역공동체(IPLCs)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은 상호합의조건(MAT)상에 전통 지식으로 기술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음

※ EU ABS 이행법률은 EU 회원국이 개별법령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 02



## 네덜란드 NETHERLANDS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6. 8. 19.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6. 11. 17.
ABS 적용대상	유전자원
입장	유전자원 제공국/ 이용국
국가연락기관/ 연락처	유전자원센터 nagoyanl@wur.nl

### Netherlands



###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항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6. 8. 19.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6. 11. 17.
생물다양성협약 발효일	1994. 10. 10
ABS 법령	<p>EU법(공동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규칙 511/2014</li> <li>• 유럽위원회 이행규칙 2015/1866</li> <li>• 유럽위원회 나고야의정서 지침</li> </ul> <p>• 나고야의정서법(Wet implementatie Nagoya Protocol)</p>
ABS 관련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식물보호법(Flora en Fauna Wet, Flora and Fauna Act)</li> <li>• 자연보호법(Natuurbeschermingswet, Nature Conservation Act)</li> <li>• 산림법(Boswet, Forest Act)</li> <li>•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li> </ul>
ABS 적용대상과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 유전자원</li> </ul> <p>※ 네덜란드의 경우 국내법에 적용대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나고야의정서 상의 일반정의규정 및 EU규칙 상 정의규정에 따릅니다.</p>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유전자원센터(Centre for Genetic Resources)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CNA)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담당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락기관 담당자 : Mr. Martin Brink</li> <li>E-mail : nagoyanl@wur.nl</li> <li>Tel : +31 317 483 520</li> <li>FAX : +31 317 418 094</li> <li>• 국가책임기관 담당자 : Ms Kim van Seeters</li> <li>E-mail : vanSeeters@minez.nl</li> <li>Tel : +31 (0)6 31002237</li> </ul>
관련사이트	<p>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덜란드 국가연락기관 : <a href="http://www.absfocalpoint.nl">http://www.absfocalpoint.nl</a></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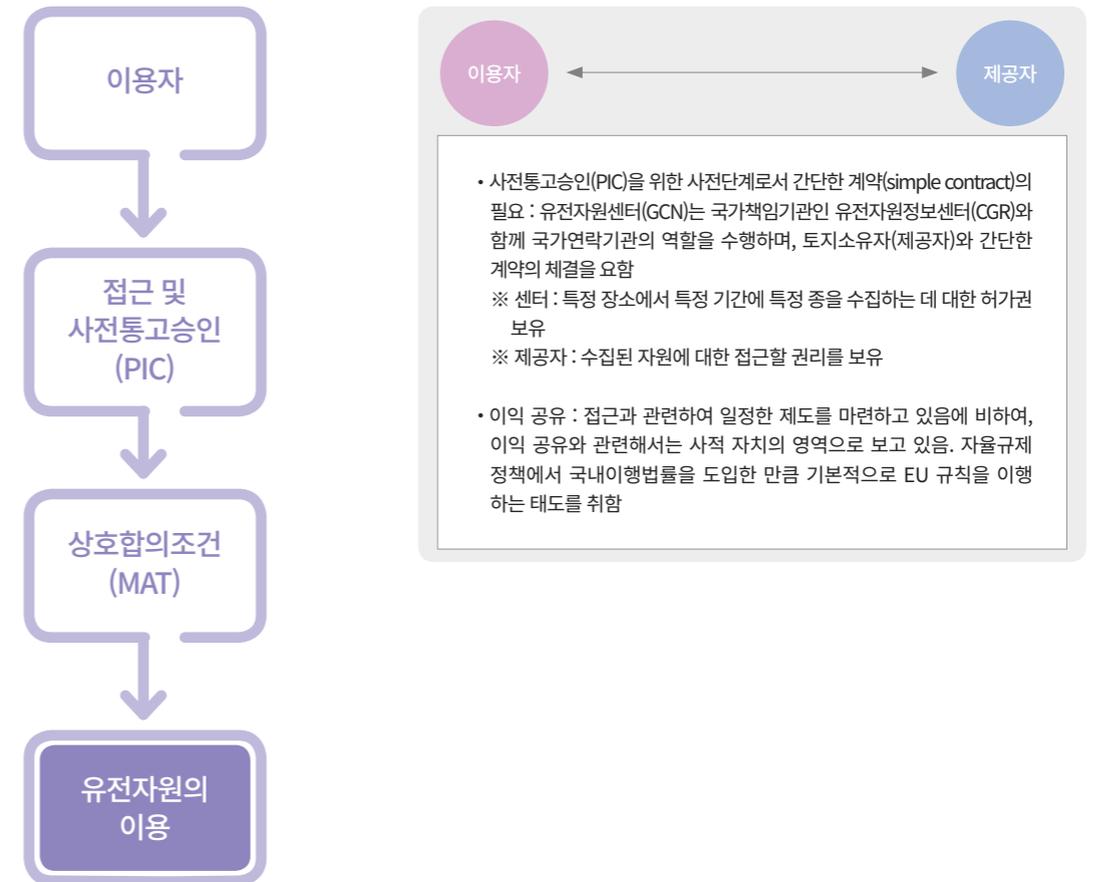
## ABS법 주요내용(나고야의정서법)

구분	내용
세션 1	법의 근거 조항
세션 2	금지사항, 규칙의 제정
세션 3	규칙의 면제
세션 4	관련기관의 지정
세션 5	명령을 부과할 권한
세션 6	위법하게 국외 유전자원을 취득한 이용자에 대한 조치, 이용자의 의무 등
세션 7	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한 범죄 및 처벌 규정
세션 8	경제적 위반행위
세션 9	발효
세션 10	적용

※ 네덜란드 ABS법은 이용국의 관점에서 내국인(네덜란드인)이 제공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ABS 법령은 지속적으로 제·개정 될 수 있으며, 최신 법령은 ABSC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BS 절차



※ 네덜란드는 유전자원 이용자 입장에서 입법을 하고 있어, 네덜란드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네덜란드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과 같이 민사상 일반 계약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03



# 덴마크 DENMARK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4. 5. 1.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4. 10. 12.

ABS 적용대상 유전자원

입장 유전자원 제공국/  
이용국

국가연락기관/  
연락처 자연청  
ejj@mst.dk

Denmark



##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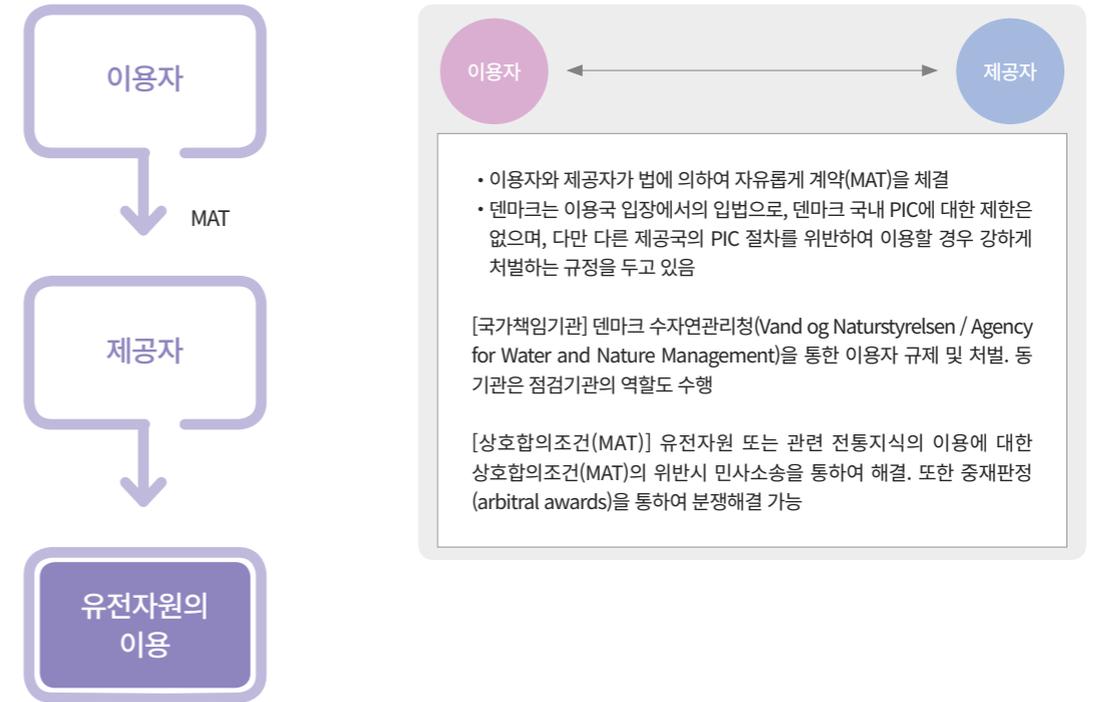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4. 5. 1.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4. 10. 12.
생물다양성협약 발효일	1993. 12. 21.
ABS 법령	<p>EU법(공동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규칙 511/2014</li> <li>• 유럽위원회 이행규칙 2015/1866</li> <li>• 유럽위원회 나고야의정서 지침</li> </ul> <p>• 유전자원을 이용한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LOV nr 1375 af 23/12/2012 om udbyttedeling ved anvendelse af genetiske ressourcer)</p> <p>• 유전자원을 이용한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발효에 관한 행정명령(Bekendtgørelse nr 1101 af 06/10/2014 om ikrafttræden af lov om udbyttedeling ved anvendelse af genetiske ressourcer)</p>
ABS 적용대상과 정의	<p>• 적용대상 : 유전자원</p> <p>※ 덴마크의 경우 국내법에 적용대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나고야의정서의 일반정의규정 및 EU규칙 상 정의규정에 따릅니다.</p>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자연청 (Biodiversity and Species, Nature Agency)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CNA)	수자연관리청(Agency for Water and Nature Management)
점검기관 (CheckPoints, CP)	수자연관리청(Agency for Water and Nature Management)
담당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락기관 담당자 : Ms. Eva Juul Jensen</li> <li>E-mail : ejj@mst.dk</li> <li>Tel : +45 93 58 79 49</li> <li>• 국가책임기관 담당자 : Vand og Naturstyrelsen</li> <li>E-mail : svana@svana.dk</li> </ul>
관련사이트	<p>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덴마크 자연청 : <a href="http://naturstyrelsen.dk/">http://naturstyrelsen.dk/</a></li> <li>• 수자연관리청 : <a href="http://www.svana.dk">http://www.svana.dk</a></li> </ul> <p>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정보/D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덴마크 유전자원정보센터 : <a href="http://www.dk-chm.dk">http://www.dk-chm.dk</a></li> </ul>

## ABS법 주요내용

구분	내용
유전자원을 이용한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목적, 정의, 제공국의 법률을 위반한 유전자원의 이용,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 이용자의 금지사항 및 이용 준수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의 제정, 장관의 역할, 조사 및 수색권한, 장관의 권한, 공동조치에 관한 외국정부와의 협정체결, 법 위반 시 벌금 등 조치, 명령, 예외사항 ※ 예외 : 본 법은 페로제도와 그린란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전자원을 이용한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발효에 관한 행정명령	집행명령의 효력발효일, 국가책임기관의 지정

※ 덴마크의 ABS법은 이용국의 관점에서 내국인(덴마크인)이 제공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ABS 법령은 지속적으로 제·개정 될 수 있으며, 최신 법령은 ABSC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BS 절차



※ 덴마크는 유전자원 이용자 입장에서의 입법을 하고 있어, 덴마크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덴마크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과 같이 민사상 일반 계약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덴마크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의 사전통고승인(PIC)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 04



## 독일 GERMANY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6. 4. 21.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6. 7. 20.

ABS 적용대상 유전자원

입장 유전자원 이용국

국가연락기관/  
연락처 자연보전및경관관리부  
stefan.luetkes@bmub.bund.de

Germany



###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항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6. 4. 21.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6. 7. 20.
생물다양성협약 발효일	1993. 12. 21.
ABS 법령	<p>EU법(공동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규칙 511/2014</li> <li>• 유럽위원회 이행규칙 2015/1866</li> <li>• 유럽위원회 나고야의정서 지침</li> </ul> <p>유럽이사회 규칙 511/2014 이행에 관한 독일 ABS 연방법(Gesetz zur Umsetzung der Verpflichtungen nach dem Nagoya-Protokoll, zur Durchführung der Verordnung 511/2014/EU und zur Änderung des Patentgesetzes sowie zur Änderung des Umweltauditgesetzes)</p>
ABS 적용대상과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 유전자원</li> </ul> <p>※ 독일의 경우 국내법에 적용대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나고야의정서 상의 일반정의규정 및 EU규칙 상 정의규정에 따릅니다.</p>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자연보전 및 경관관리부 (Nature Conservation and Landscape Management Legislation)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CNA)	독일연방자연보전청(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
담당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락기관 담당자 : Dr. Stefan Lütkes E-mail : stefan.luetkes@bmub.bund.de Tel : +49 228 99 305 2670 FAX : +49 228 99 305 2694</li> <li>• 국가책임기관 담당자 : Thomas Greiber E-mail : thomas.greiber@bfn.de</li> </ul>
관련사이트	<p>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국가책임기관 홈페이지 : <a href="http://abs.bfn.de">http://abs.bfn.de</a></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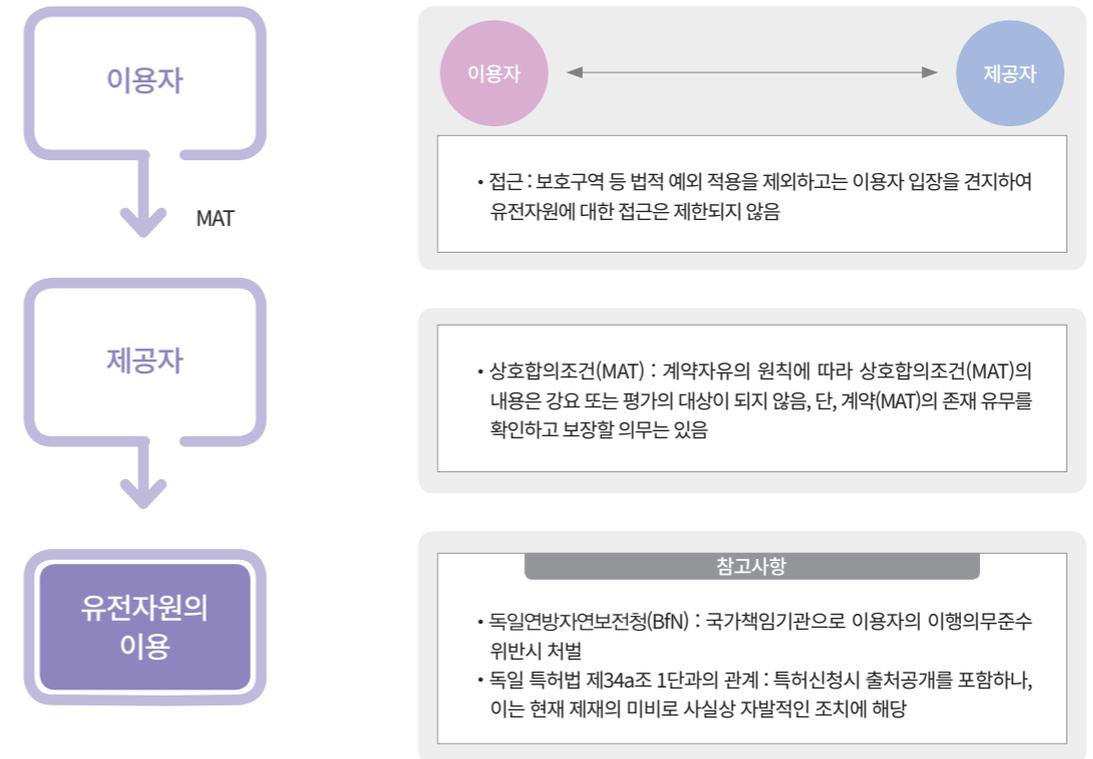
## ABS법 주요내용(유럽이사회 규칙 511/2014 이행에 관한 독일 ABS 연방법)

구분	내용
제1장 목표 및 권한	국가책임기관 등 기관의 역할
제2장 명령 및 개선조치	이용자의 의무준수를 위한 명령 및 조치
제3장 법적조치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	독일연방자연보전청의 역할 및 EU/511/2014에 의하여 규제할 수 있는 사항
제4장 행정벌	과태료 및 벌금
제5장 몰수	제4장에서의 범죄에서 사용된 물건의 몰수
제6장 집행권한	국가책임기관, 국가연락기관 등의 집행 및 결정
제7장 수수료	EU/511/2014 제5조에서의 등록수수료에 관한 규정

※ 독일의 ABS법은 이용국의 관점에서 내국인(독일인)이 제공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ABS 법령은 지속적으로 제·개정 될 수 있으며, 최신 법령은 ABSC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BS 절차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 05



## 스페인 SPAIN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4. 6. 3.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4. 10. 12.
ABS 적용대상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입장	유전자원 제공국/ 이용국
국가연락기관/ 연락처	자연환경부 maymerich@mapama.es

Spain



###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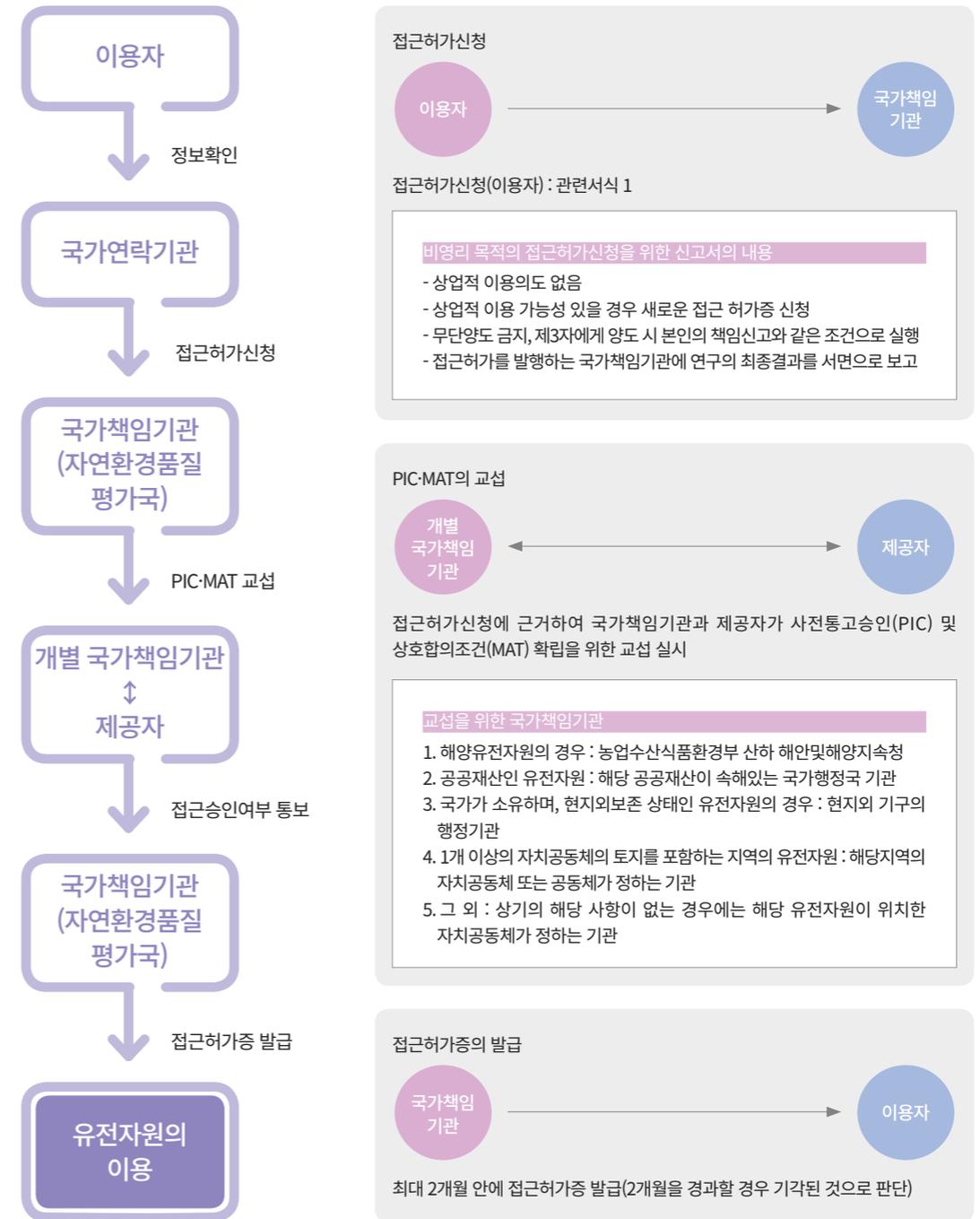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4. 6. 3.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4. 10. 12.
생물다양성협약 발효일	1993. 12. 21.
ABS 법령	<p>EU법(공통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규칙 511/2014</li> <li>• 유럽위원회 이행규칙 2015/1866</li> <li>• 유럽위원회 나고야의정서 지침</li> </ul> <p>• 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사용통제에 관한 2월 24일자 칙령 154/2017(Real Decreto 124/2017, de 24 de febrero, relativo al acceso a los recursos genéticos procedentes de taxones silvestres y al control de la utilización)</p>
ABS 적용대상과 정의	<p>• <b>적용대상</b>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p> <p>※ 스페인의 경우 국내법에 적용대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나고야의정서 상의 일반정의규정 및 EU규칙 상 정의규정에 따릅니다.</p>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농림수산식품환경부 (Ministerio de Agricultura y Pesca, Alimentación y Medio Ambiente)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CNA)	농림수산식품환경부 (Ministerio de Agricultura y Pesca, Alimentación y Medio Ambiente) 산하 자연환경품질평가국
담당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락기관 담당자 : Mr. Miguel Aymerich</li> <li>• E-mail : maymerich@mapama.es</li> <li>• Tel : +34 91 5976056</li> </ul>
관련사이트	<p>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페인 농림수산식품환경부 홈페이지 : <a href="http://www.mapama.gob.es/es/">http://www.mapama.gob.es/es/</a></li> </ul> <p>행정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S 전자파일링(PIC 신청 등) : <a href="https://sede.mapama.gob.es/portal/site/se/procedimientos-intermedio?theme_id=5">https://sede.mapama.gob.es/portal/site/se/procedimientos-intermedio?theme_id=5</a></li> </ul> <p>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정보/D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생생물 모니터링 네트워크 : <a href="http://www.traffic.org/">http://www.traffic.org/</a></li> </ul>

## ABS법 주요내용(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사용통제에 관한 2월 24일자 칙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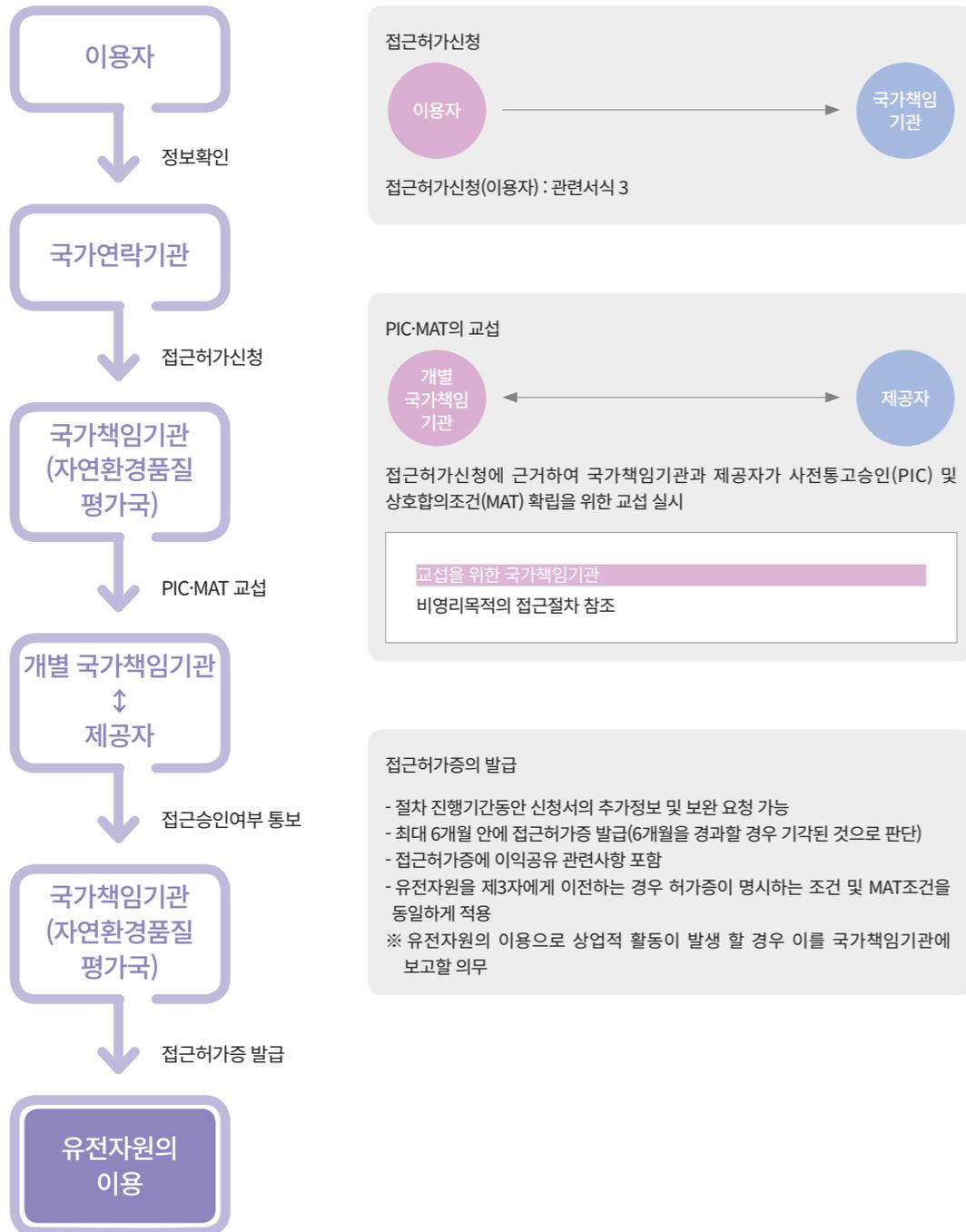
구분	내용
제1장 일반사항 (제1조~제3조)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제2장 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그 사용에서 발생한 이익공유 (제4조~제10조)	유전자원의 접근, 유전자원의 접근을 위한 국가책임기관, 사용 목적이 비영리적인 연구인 경우 유전자원의 접근을 위한 절차, 사용목적이 상업적인 경우 유전자원의 접근을 위한 절차, 비상상태에서의 유전자원의 접근, 현지 외 보전기관의 활동 중지, 유전자원 접근허가증에 대한 국가연락기관의 통지 및 나고야의정서 ABSCH로의 회부
제3장 스페인에서 유전자원과 관련한 전통지식의 접근 및 사용에 대한 국가정보 시스템 (제11조)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접근 및 사용에 대한 국가정보 시스템
제4장 스페인에서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사용 추정 (제12조~제16조)	추적 및 이행조치, EU/511/2014의 적용을 위한 스페인 당국의 지정, 적절주의 의무의 실행, 적절주의의무 이행 확인을 위한 관리, 스페인에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사용의 합법성 통제를 위한 국가계획
제5장 EU유전자원신탁등록처에 스페인 유전자원의 포함 (제17조)	EU 유전자원신탁등록처에 스페인 유전자원의 포함
제6장 관할당국 간의 협력 및 협조 (제18조)	스페인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사용위원회
제7장 징계체제 (제19조)	징계체제
부록	1. 비영리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스페인 유전자원의 접근 신청서의 최소 내용 및 이익공유 신고서 2. 비영리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스페인 유전자원의 접근 허가증의 최소 내용 3.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스페인 유전자원의 접근 신청서의 최소 내용 및 이익공유 신고서 4.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스페인 유전자원의 접근 허가증의 최소내용

※ ABS 법령은 지속적으로 제·개정 될 수 있으며, 최신 법령은 ABSC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BS 절차(비영리 연구목적일 경우 접근절차)



**ABS 절차**(상업목적일 경우 접근절차)



**관련서식 1**(비영리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 접근신청서의 최소내용 및 이익공유 신고서)

**부록 1.**  
비영리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 접근신청서의 최소내용 및 이익공유 신고서

**PART 1. 이용자 정보**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납세자번호,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문서:
3. 주소:
4. 전화번호:
5. 전자우편:
6. 신청자 정보: 개인: 회사: 기관: (택 1)
7. 회사 또는 기관일 경우 아래 정보 추가 기입
  - 가) 상호:
  - 나) 납세자 코드-납세자 번호:
  - 다) 주소:

**PART 2. 비영리 연구의 정보**

1. 간단한 서술 (목적, 이유 및 의도):
2. 연구 계획 및 개요:
3. 참여 기관:
4. 스페인에서의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보존을 위해 기대하는 연구의 유용성

**PART 3. 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의 접근**

1. 수집할 유전자원의 서술:
2. 수집할 위치 또는 수집을 진행할 현지의 컬렉션
3. 접근 예상일:
4. 스페인컬렉션에 재료의 사본을 보관할 예정인지의 여부  
(해당하는 경우 컬렉션 제목 명기)

**PART 4. 회사 또는 연구소의 법적 대표 또는 연구원 신고서**

본 문서를 통해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1. 접근을 신청하는 유전자원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12월 13일자 법 42/2007 제71.6조에 따라,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상업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새로운 접근 허가증을 신청한다;
3. 허가 받지 않은 제3자에게 유전자원을 양도하지 않으며, 그럴 경우, 유전자원의 제3자 양도는 본 신고서와 같은 조건하에 이루어진다.
4. 유전자원의 접근 허가증을 발급하는 관할 당국에 연구의 최종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장소, 일시, 서명:

 **관련서식 2**(비영리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 접근허가증의 최소 내용)

**부록 2.**  
**비영리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 접근허가증의 최소 내용**

1. 접근 허가 관할 당국:
2. 사전 동의서를 발급하고 상호합의조건을 설정하는 기관:
3. 해당하는 경우, 허가증의 참조번호:
4. 허가증 발급일:
5. 해당하는 경우, 허가증 만료일:
6. 허가증 발급의 대상인 자연인/연구기관/회사:
7. 생물자원의 비영리 연구수행에 사용하기 위해 발급된 연구목적의 상호합의조건(연구의 종류와 목적을 명기할 것)
8. 허가증이 적용되는 유전자원:
9. 허가증이 적용되는 유전자원의 서술:
10. 허가증의 사용목적 및 한도: 비영리 연구목적.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상업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업적 목적을 위한 새로운 접근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사용된 유전자원의 원산국을 항상 스페인으로 표기할 것
11. 제3자 양도 조건: 허가 받지 않은 제3자에게 유전자원을 양도하지 않으며, 그럴 경우, 유전자원의 제3자 양도는 본 허가증과 이용자의 신고서와 같은 조건하에 이루어짐

 **관련서식 3**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의 접근 신청서의 최소 내용 및 이익공유 신고서)

**부록 3.**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의 접근  
신청서의 최소 내용 및 이익공유 신고서**

**PART 1. 이용자 정보**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납세자번호,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문서:
3. 주소:
4.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5. 신청자 정보: 개인: 회사: 기관: (택 1)
6. 회사 또는 기관일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한다:
  - 가) 상호:
  - 나) 납세자 코드-납세자 번호:
  - 다) 주소:

**PART 2. 사용 정보**

1. 사용목적(목적, 이유):
2. 사용의 예상 사용계획:
3. 참여 기관:
4. 스페인에서의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보존을 위해 기대하는 연구의 유용성

**PART 3. 유전자원의 접근**

1. 수집할 유전자원 :
2. 수집할 위치 또는 수집을 진행할 현지와 컬렉션
3. 접근 예상일:
4. 스페인 컬렉션에 재료의 사본을 보관할 예정인지의 여부  
(해당하는 경우 컬렉션 제목 명기)

**PART 4. 사전 동의 및 상호합의조건 확립 (첨부할 것)**

상기 정보 중 기밀의 성격을 지닌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표기하고 증명하십시오.

장소, 일시, 서명:

 **관련서식 4**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의 접근 허가증의 최소 내용)

**부록 4.**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의 접근  
허가증의 최소 내용**

1. 접근 허가 관할 당국:
2. 사전 동의를 발급하고 상호합의조건을 확립하는 기관:
3. 해당하는 경우, 허가증의 참조번호:
4. 허가증 발급일:
5. 해당하는 경우, 허가증 만료일:
6. 허가증 발급의 대상인 자연인/연구기관/회사의 정보:
7. 생물자원의 비영리 연구수행에 사용하기 위해 발급된 연구목적의 상호합의조건(연구의 종류와 목적을 명기할 것)
8. 허가증이 적용되는 유전자원:
9. 허가증이 적용되는 유전자원의 서술:
10. 허가증의 사용목적 및 한도:
11. 상업적 목적
12. 상호합의조건의 이행
  - 가) 사용된 유전자원의 원산국을 항상 스페인으로 표기할 것
  - 나) 유전자원의 사용에서 상업적 활동이 파생될 경우 이를 관할 당국에 보고한다. (특허 신청, 제품 등록 및 판매 등)
  - 다) 특허의 유효기간 동안 또는 제품이 시장에 존재하는 동안, 이익의 연간 정산을 위해 획득한 순이익에 대하여 보고한다.
13. 제3자 양도 조건: 제3자에게 유전자원을 양도 할 경우, 본 허가증 및 확립된 상호 조건과 같은 조건하에 이루어진다.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06

# 슬로바키아

## SLOVAKIA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5. 12. 29.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6. 03. 28.
ABS 적용대상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입장	유전자원 이용국
국가연락기관/ 연락처	환경부 biodiversity@enviro.gov.sk

Slovakia



###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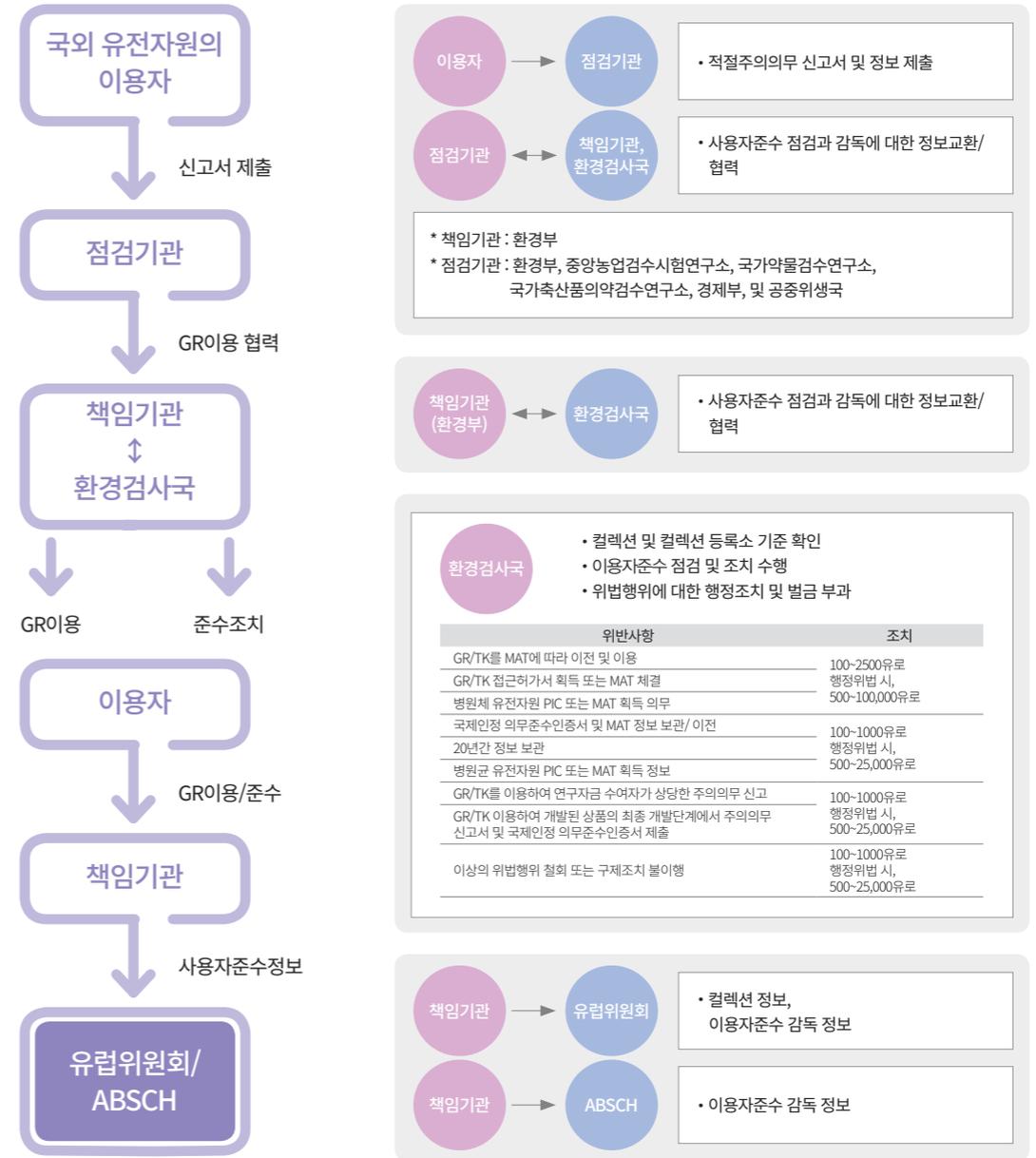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5. 12. 29.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6. 03. 28.
생물다양성협약 발효일	1994. 11. 23.
ABS 법령	<p>EU법(공통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규칙 511/2014</li> <li>• 유럽위원회 이행규칙 2015/1866</li> <li>• 유럽위원회 나고야의정서 지침</li> </ul> <p>•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법 263/2015 (Act. No. 263/2015 Col. on competences in area of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its utilization)</p>
ABS 적용대상과 정의	<p>• <b>적용대상</b> :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p> <p>※ 슬로바키아의 경우 국내법에 유전자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나고야의정서 상의 일반정의규정 및 EU규칙상 정의규정에 따릅니다.</p>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환경부, 자연보전경관보호부 (Division of Nature Conservation and Landscape Protection, Ministry of Environment)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CNA)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담당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락기관(환경부) 담당자 : Mr. Peter Maňka E-mail : peter.manka@enviro.gov.sk / biodiversity@enviro.gov.sk Tel : +421 2 5956 2413</li> <li>• 국가책임기관(환경부) 담당자 : Mr. Peter Maňka E-mail : podatelna@enviro.gov.sk Tel : +421 2 5956 2284, +421 2 577 83 116</li> </ul>
관련 사이트	<p><b>관련기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로바키아 환경청(Slovak Environmental Agency) : <a href="http://www.sazp.sk/public/index/index.php">http://www.sazp.sk/public/index/index.php</a></li> <li>• 국가정보센터(National CHM) : <a href="http://www.fns.uniba.sk/zp/biod">http://www.fns.uniba.sk/zp/biod</a></li> </ul> <p><b>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정보/DB</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로바키아 환경정보포털 : <a href="http://www.enviroportal.sk/">http://www.enviroportal.sk/</a></li> </ul>

## ABS법 주요내용(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

구분	내용
환경부의 기능 (제2조)	환경부(책임기관) 역할
점검기관의 기능 (제3조-제8조)	중앙농업검수시험연구소, 국가약물검수연구소, 가축생물상품과 의약품 검수기구, 경제부, 공공보건서비스 및 기타 유전자원 사용 관련기관
위법행위와 처벌 (제10조-제11조)	위법행위와 행정적 위반행위
(제12조-제13조)	절차 및 발효

※ ABS 법령은 지속적으로 제·개정 될 수 있으며, 최신 법령은 ABSC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BS 절차(국의 유전자원 취득 시 국내 신고, 점검 절차)



※ 책임기관 : 환경부

※ 점검기관 : 환경부, 중앙농업검수시험연구소, 국가약물검수연구소, 국가축산품의약품검수연구소, 경제부 및 공중위생국

※ 슬로바키아는 유전자원 이용자 입장에서의 입법을 하고 있어, 슬로바키아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슬로바키아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과 같이 민사상 일반 계약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07



# 영국

##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6. 2. 22.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6. 5. 22.
ABS 적용대상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입장	유전자원 이용국
국가연락기관/ 연락처	환경식품농촌부/ holly.kelley-weil@defra.gsi.gov.uk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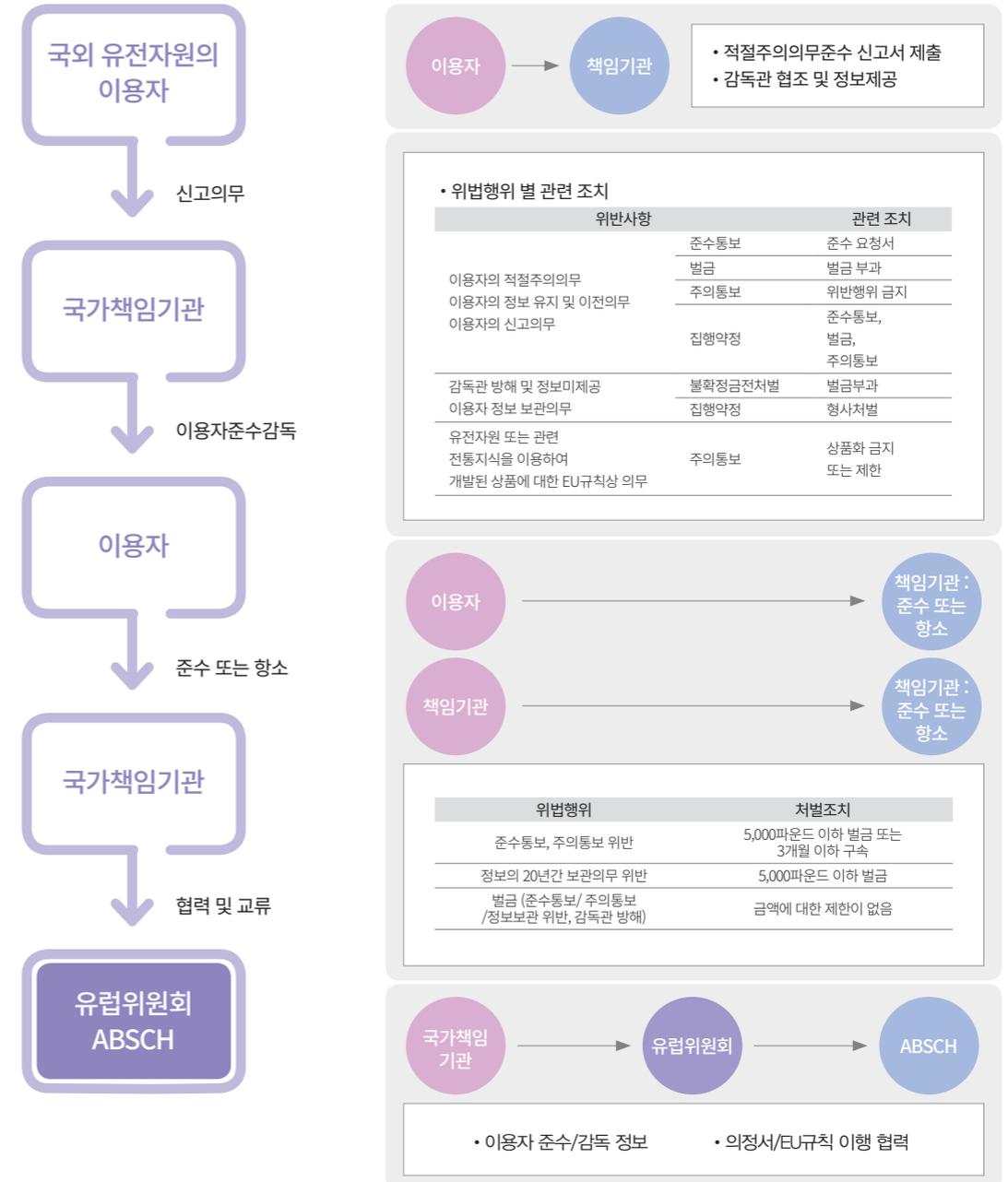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6. 2. 22.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6. 5. 22.
생물다양성협약 가입일(발효일)	1994. 9. 1.
ABS 법령	<p>EU법(공동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규칙 511/2014</li> <li>• 유럽위원회 이행규칙 2015/1866</li> <li>• 유럽위원회 나고야의정서 지침</li> </ul> <p>• 2015년 3월 나고야의정서규칙 2015 No. 821(Nagoya Protocol (Compliance) Regulations 2015 No. 821.)</p>
ABS 적용대상과 정의	<p>• 적용대상 :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p> <p>※ 영국의 경우 국내법에 유전자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나고야의정서 상의 일반정의규정 및 EU규칙 상 정의규정에 따릅니다.</p>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환경식품농촌부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fra)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CNA)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규제단속국 (Regulatory Delivery,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점검기관 (Checkpoint, CP)	규제단속국 (Regulatory Delivery, Dbeis)
담당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락기관 : 환경식품농촌부 담당자 : Ms. Holly Kelley-Weil E-mail : holly.kelley-weil@defra.gsi.gov.uk Tel : +44 208 225 8259</li> <li>• 국가책임기관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규제단속국 담당자 : Katie Beckett E-mail : katie.beckett@beis.gov.uk Tel : +44 208 943 7272</li> </ul>
관련사이트	<p>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식품농촌부 : <a href="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nvironment-food-rural-affairs">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nvironment-food-rural-affairs</a></li> <li>• 국가정보센터(National CHM) : <a href="http://uk.chm-cbd.net">http://uk.chm-cbd.net</a></li> </ul>

## ABS법 주요내용(2015년 3월 나고야의정서규칙)

구분	내용
1장 도입 (제1조-제2조)	규정별 발효일자와 용어 정의
2장 책임기관 및 기타 기능 (제3조-제6조)	책임기관, 컬렉션 등록, 이용자 준수 감독, 기타 기능
3장 벌칙 (제7조-제8조)	EU규칙에 따른 주의의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 - 민사제재 부과 권한, 민사제재에 적용되는 EU규칙의 주의의무
4장 집행 (제9조-제12조)	감독관, 출입권한, 점검권한, 집행권에 대한 제한
5장 위법 및 벌금 (제13조-제17조)	준수 또는 주의통보 그리고 EU규칙에 따른 정보 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위법 규정 - 위법행위, 감독관 집행방해, 법인/합자회사/조합의 위법행위, 처벌, 집행비용 회복
6장 기타규정 (제18조-제19조)	통보, 검토
부칙 : 민사제재	1부 : 준수통보 및 금전적 처벌 2부 : 주의통보 3부 : 집행착수 4부 : 미준수 처벌 5부 : 통보 철회 및 수정 6부 : 진정 요청 7부 : 지도 및 홍보

※ ABS 법령은 지속적으로 제·개정 될 수 있으며, 최신 법령은 ABSC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BS 절차(국의 유전자원 취득 시 국내 신고, 점검 절차)



※ 영국은 유전자원 이용자 입장에서 입법을 하고 있어, 영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과 같이 민사상 일반 계약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08



# 핀란드 FINLAND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6. 06. 03.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6. 09. 01.

ABS 적용대상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입장 유전자원 제공국

국가연락기관/  
연락처 핀란드환경연구원  
katileena.lohtander-buckbee@ym.fi

## Finland



###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항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6. 06. 03.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6. 09. 01.
생물다양성협약 가입일(발효일)	1994. 10. 25.
ABS 법령	<p>EU법(공동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규칙 511/2014</li> <li>• 유럽위원회 이행규칙 2015/1866</li> <li>• 유럽위원회 나고야의정서 지침</li> </ul> <p>• 핀란드 나고야의정서규칙 2015 No. 821(Nagoya Protocol (Compliance) Regulations 2015 No. 821.)</p> <p>• CBD 나고야의정서 이행법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16)</p>
ABS 적용대상과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토착민이 보유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 핀란드 토착민으로 'Saami족'이 있습니다.</li> <li>•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 EU규칙 제3조 제2항에 정의에 따름</li> <li>• 유전자원 관련 토착민(Saami족) 사람들의 전통지식 : 지식, 기술 및 능력이 Saami족 문화에서 유지, 진화되고 있으며, 전통에 따라 한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상호합의조건에 명시된 것</li> </ul>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핀란드환경연구원 (Finnish Environment Institute)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CNA)	핀란드환경연구원 (Finnish Environment Institute) 핀란드천연자원연구원(Natural Resources Institute Finland)
담당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락기관 핀란드환경연구원 담당자 : Ms. Katileena Lohtander-Buckbee E-mail : katileena.lohtander-buckbee@ym.fi Tel : +358 400 148 649</li> <li>• 국가책임기관 핀란드환경연구원 담당자 : E-mail : katileena.lohtander-buckbee@ymparisto.fi / kirjaamo.syke@ymparisto.fi Tel : +358 295 251 390 / +358 295 252 001</li> <li>• 점검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 국가책임기관과 동일</li> </ul>
관련사이트	<p>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핀란드 환경연구원 : <a href="http://www.syke.fi/en">http://www.syke.fi/en</a></li> <li>• 핀란드 천연자원연구원 : <a href="https://www.luke.fi/en/">https://www.luke.fi/en/</a></li> <li>• 핀란드 ABS 정보 : <a href="https://www.biodiversity.fi/geneticresources/home">https://www.biodiversity.fi/geneticresources/home</a></li> <li>• 핀란드외교부-개발정책(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Finland, Development Policy) : <a href="http://forin.finland.fi/Public/default.aspx?nodeid=15316&amp;contentlan=2&amp;culture=en-us">http://forin.finland.fi/Public/default.aspx?nodeid=15316&amp;contentlan=2&amp;culture=en-us</a></li> <li>• 핀란드외교부-사미족과 토착민권리(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Finland, ,Rights of the indigenous peoples, the Saami people) : <a href="http://forin.finland.fi/Public/default.aspx?nodeid=15630&amp;contentlan=2&amp;culture=en-us">http://forin.finland.fi/Public/default.aspx?nodeid=15630&amp;contentlan=2&amp;culture=en-us</a></li> <li>• 사미의회(The Saami Parliament) : <a href="http://www.samediggi.fi/index.php?lang=english">http://www.samediggi.fi/index.php?lang=english</a></li> <li>• 핀란드 환경행정공동사이트(Joint website of Finland's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 <a href="http://www.environment.fi">http://www.environment.fi</a></li> </ul> <p>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정보/D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핀란드 유전자원 DB : <a href="https://www.biodiversity.fi/">https://www.biodiversity.fi/</a></li> <li>• 국가생물다양성정보센터(National CHM) : <a href="http://www.biodiversity.fi">http://www.biodiversity.fi</a></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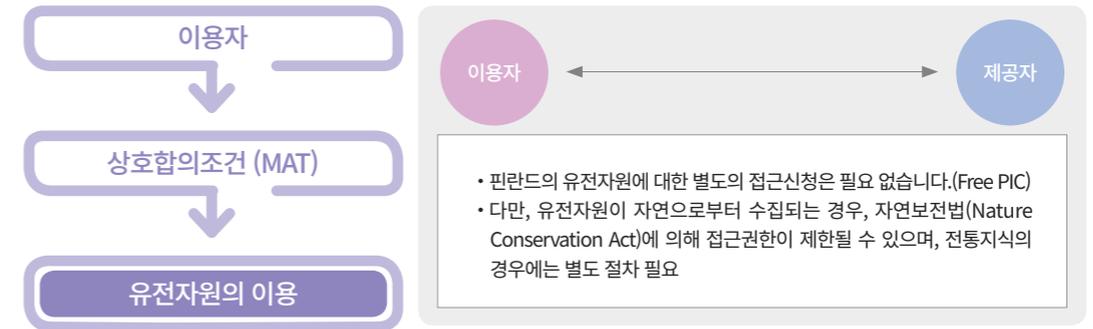
## ABS법 주요내용 (핀란드 나고야의정서규칙 2015 No. 821)

구분	내용
법의 적용범위 (제1절-제4절)	법의 목적, 적용의 범위, 다른 법규와의 관계, 용어 정의
이용자 통보의무 (제5절)	이용자의 통보의무
사미족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제6절-제8절)	사미족의 데이터베이스, 사미족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사미족의 권리약화 금지
ABS 국가기관 (제9절-제14절)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및 기능, 정보획득 및 조사권한, 행정적 지원
유전자원규범 위반행위 조치 (제15절-제16절)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유전자원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조치
위반행위 조치 (제17절)	발효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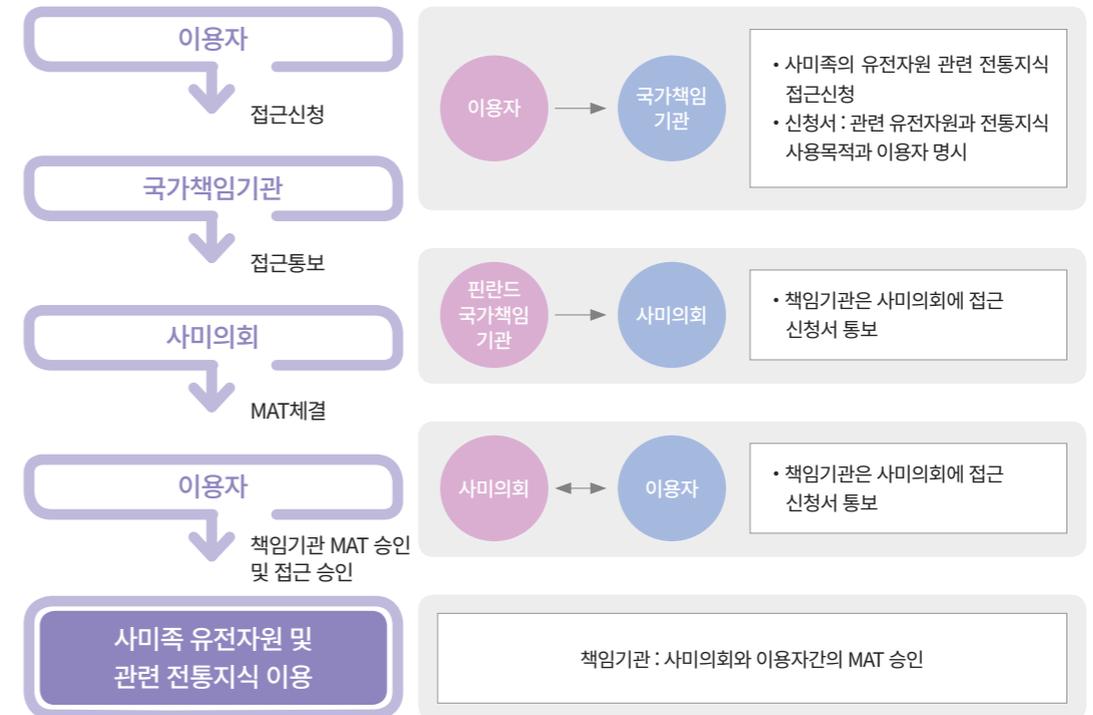
※ ABS 법령은 지속적으로 제·개정 될 수 있으며, 최신 법령은 ABSC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BS 절차

### 일반 절차



### Saami족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09



# 헝가리 HUNGARY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4. 04. 29.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4. 10. 12.
ABS 적용대상	유전자원
입장	유전자원 제공국/ 이용국
국가연락기관/ 연락처	농업부/ levente.korosi@fm.gov.hu

## Hungary



###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항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4. 04. 29.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4. 10. 12.
생물다양성협약 발효일	1994. 05. 25.
ABS 법령	<p>EU법(공통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규칙 511/2014</li> <li>• 유럽위원회 이행규칙 2015/1866</li> <li>• 유럽위원회 나고야의정서 지침</li> </ul> <p>• 나고야의정서 공표법 VIII (Act VIII of 2014 on the publication of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14)</p> <p>• 나고야의정서 이행령 3/2016 (Regulation 3/2016 (I. 20.) of the Government on the rules of implementation of certain international and European community legislation in relation to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p>
기타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호의 일반규칙(General Rules of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에 대한 1995년 법 53 제110조 제7항 제6호 및 기본법(Fundamental Law) 제15조 제1항</li> <li>• 자연보전과 수렵분야 간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between Nature Conservation and Hunting Sectors 2012-2017)</li> </ul>
ABS 적용대상과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li> </ul> <p>※ 헝가리의 경우 국내법에 적용대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나고야의정서 상의 일반정의규정 및 EU규칙 상 정의규정에 따릅니다.</p>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CNA)	페슈트주청 (Pest County Government Office)
담당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락기관 농업부 담당자 : Mr. Levente Kőrösi E-mail : levente.korosi@fm.gov.hu Tel : +36 1 795 3753 FAX : +36 1 301 4646</li> <li>• 국가책임기관 페슈트주청 담당자 E-mail : orszagoszoldhatosag@pest.gov.hu Tel : +36 1 328 5812 , +36 1 485 6957, +36 1 485 6926</li> </ul>
관련사이트	<p>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개발부(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 <a href="http://www.kormany.hu/en/ministry-of-rural-development">http://www.kormany.hu/en/ministry-of-rural-development</a></li> </ul>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헝가리 생물다양성 CHM : <a href="http://www.biodiv.hu">http://www.biodiv.hu</a></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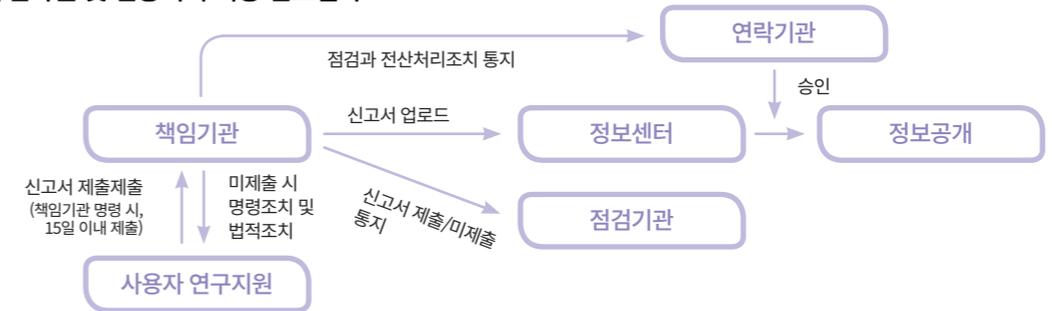
## ABS법 주요내용(나고야의정서 공표법 VIII)

구분	내용
범위 (제1절)	법령 적용범위
ABS 정부기관 (제2절-제5절)	국가연락기관과 기능, 국가책임기관, 점검기관과 기능
신고의무 (제6절)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 이용 관련 연구비 신청 시 신고의무
정보제공 (제7절)	ABS 담당 정부기관 간 정보제공
유전자원접근과 이용에 대한 법적 조치 (제8절-제9절)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이용 관련 연구비 신청 시 신고서 미제출 및 이용시 사용자 의무 위반시 행정적 및 법적 조치
종결조항 (제10절)	발효일

※ ABS 법령은 지속적으로 제·개정 될 수 있으며, 최신 법령은 ABSC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BS 절차(국의 유전자원 취득 시 국내 신고, 점검 절차)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이용 신고절차



**GR/TK 이용 연구비 지원서 제출하는 경우**

이용자 → 책임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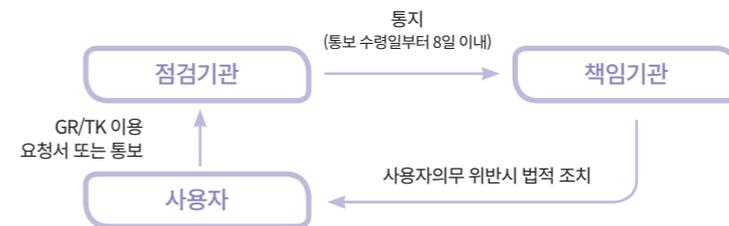
- 신고서 제출
  - \* 신고서 포함내용 : 컬렉션 등록소, 사용자준수 감독, 모범관행 관련 사용자의 의무 수행
- 책임기관이 신고서 제출 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 :
  - 연구비 지원서 제출 시 신고서미제출 경우

상품 최종 개발단계에서 제출할 신고서, 국제인증 의무준수인증서 및 MAT 관련 정보 미제출 경우(상품 허가, 유통 이전에 신고)

- 신고서 미제출시 조치 : 연구비 지원 중단, 유통 불허 또는 금지
- 벌금조치 :

의무 위반 사항	법적 조치
신고서제출 명령 위반	1,000,000 포린트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이용 통보절차



이용자 → 점검기관

- \* GR/TK 이용 통보

점검기관 → 책임기관

- \* 사용자 통보 내용 통지(접수일 8일 이내)

- EU규칙 4조의 사용자 의무 위반시 조치
  - 책임기관은 점검기관으로 결과 통보 및 허가철회, 등록소 삭제, 정보공개 철회 등 제언
- 벌금조치 :

의무 위반 사항	법적 조치
EU규칙 4.3조상 주의의무 위반	5,000,000 포린트
생산된 상품에 대한 EU규칙 4.3조상 주의의무 위반	10,000,000 포린트



# 아시아 3



# Asia



아세안공동체 .....	62
라오스 .....	66
말레이시아 .....	70
미얀마 .....	77
베트남 .....	81
부탄.....	101
인도.....	105
인도네시아.....	115
일본.....	119
중국.....	123
캄보디아.....	127
필리핀 .....	131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 10

## 아세안공동체 ASEAN COMMUNITY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대상 아님
입장	유전자원 제공국

###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는?

2015년 12월, 동남아시아 10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미얀마,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이 함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3가지 영역에서의 공동체를 목표로 외연의 확대와 협력심화를 위해 출범한 단체이다.

#### ● 아세안공동체와 나고야의정서

아세안 지역은 식물, 동물, 해양생물의 알려진 종이 전세계의 20%나 될 정도로 풍부하며,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경우 약 1,000여 종의 멸종위기 종이 서식하고 있다. 유전자원의 제공국의 입장의 국가들이 다수인 아세안 국가들은 자국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4년, '생물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아세안 기본협정'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Access to Biological and Genetic Resources)을 채택하였으며, 2005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ASEAN Centre for Biodiversity, ACB)를 설립하여 아세안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호 및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기본원칙을 확립하여 ABS 정책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 관련사이트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ASEAN Centre for Biodiversity) :  
<https://aseanbiodiversity.org/>

아세안 생물다양성보전센터(ARCBC) : <https://www.arcbc.org.ph/>

## 생물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아세안 기본협정 주요내용

### ● 자원제공자

- 연방, 주정부, 정부기관, 토지소유자, 토지이용자, 토착민과 지역공동체

### ● 범위와 대상

- 토착지역공동체가 생물유전자원을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그 외의 개인, 기구나 기관은 회원국이 확립한 접근 규정에 따라야 함

### ● 국가책임기관

- 각 회원국은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하고 국내 접근에 대한 입법을 이행
- 사전통고승인(PIC)절차 마련, 접근규제에 대한 정보 보급, 아세안 생물다양성보전센터(ARCBC)와 지역정보센터(RCHM)과의 정보 연계

### ● PIC절차

- 각 회원이 지정한 국가책임기관은 PIC를 위한 국내절차 마련 필요
- PIC 수여절차에 지역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것
- PIC 절차는 토착민과 지역공동체의 관습법, 관행, 규약을 존중하고 부합하며, 접근관련 정보의 공개는 지역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일 것

### ● 이익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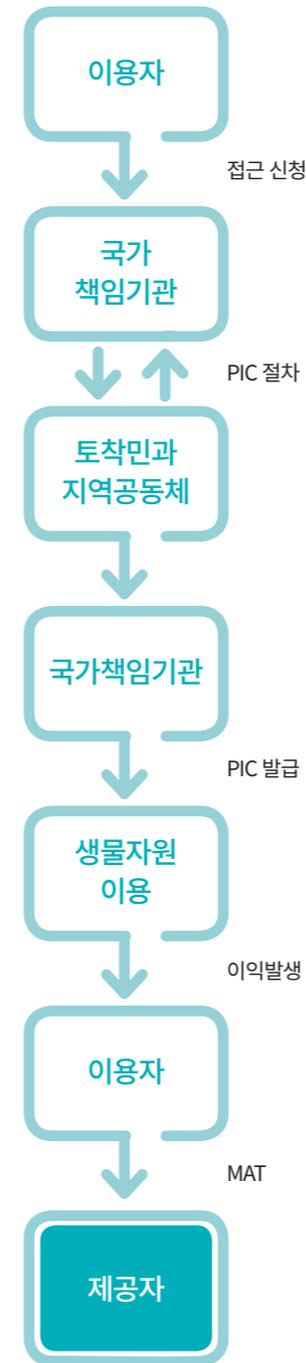
- 자원제공자, 특히 토착민과 지역공동체는 이익에 대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 협상시 자원의 사용으로 인한 잠정적인 혜택과 위해성을 공개해야 함
- 이익공유 협정은 전통지식 제도와 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됨
- 지역공동체를 생물유전자원의 적법한 이용자이자 관리자, 전통지식에 대한 창작자로서 인정해야 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회원국은 이익을 공정하고 공정하게 공유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이익공유계약은 기술이전, 능력배양 등 금전적/비금전적 형태로 공유하되 계약협상은 회원국의 재량으로 함
- 이익공유 시의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

### ● 아세안 상설 정보센터기구(RCHIM)

- 아세안 생물다양성보전센터(ARCBC)가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할 과도기적 상설 지역정보센터(RCHM)의 설립
- 지역정보센터기구는 자원이용자와 국가책임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

제1조 원칙선언  
제2조 목적  
제3조 용어정리  
제4조 범위와 대상  
제5조 접근기구  
제6조 기본협정의 이행  
제7조 지역정보센터(RCHM)  
제8조 국가책임기관  
제9조 분쟁해결  
제10조 주요당사자의 PIC참여  
제11조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제12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공공기금  
제13조 환경 및 사회평가와 생명공학안전성에 대한 관심

## ABS 절차(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



**이용자** → **국가 책임기관**

PIC 신청서 내용

1. 연구자·수집자·협력자 이름
2. 생물분석 활동 지역과 위치
3. 수집활동 기간
4. 목적·대상·사용된 자원·활동·방법·예상되는 결과물
5. 지역 협력자 정보
6. 생물분석 활동의 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잠정적인 영향
7. 국가에 대한 잠정적인 혜택

**국가 책임기관** ↔ **토착민과 지역공동체**

• 국가책임기관은 토착지역공동체의 PIC 절차에 참여

**국가 책임기관** → **이용자**

• 국가책임기관은 이용자에게 GR/TK 접근을 허용하는 PIC 발급

**이용자** → **제공자**

• 이용자는 자원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공정하고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MAT 체결

• 제공자 : IPLCs, 정부기관, 토지소유자

이익공유의 최소요건

1. 연구활동에 국가의 참여
2. 연구결과와 공유
3. 국가기관에 남은 모든 표본증빙서류
4. 국제 현지외컬렉션에 기탁된 모든 국내표본에 대한 제공국 국민의 접근
5. 제공된 물질을 통한 연구로 개발된 모든 기술을 자원제공자에게 수여
6. 수수료, 사용료의 재정적 혜택
7. 연구에 사용된 기자재의 기부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 11



## 라오스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2. 9. 26.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4. 10. 12.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	유전자원
입장	유전자원 제공국
국가연락기관/ 연락처	과학기술부 /천연자원환경부 souriodong@yahoo.co.uk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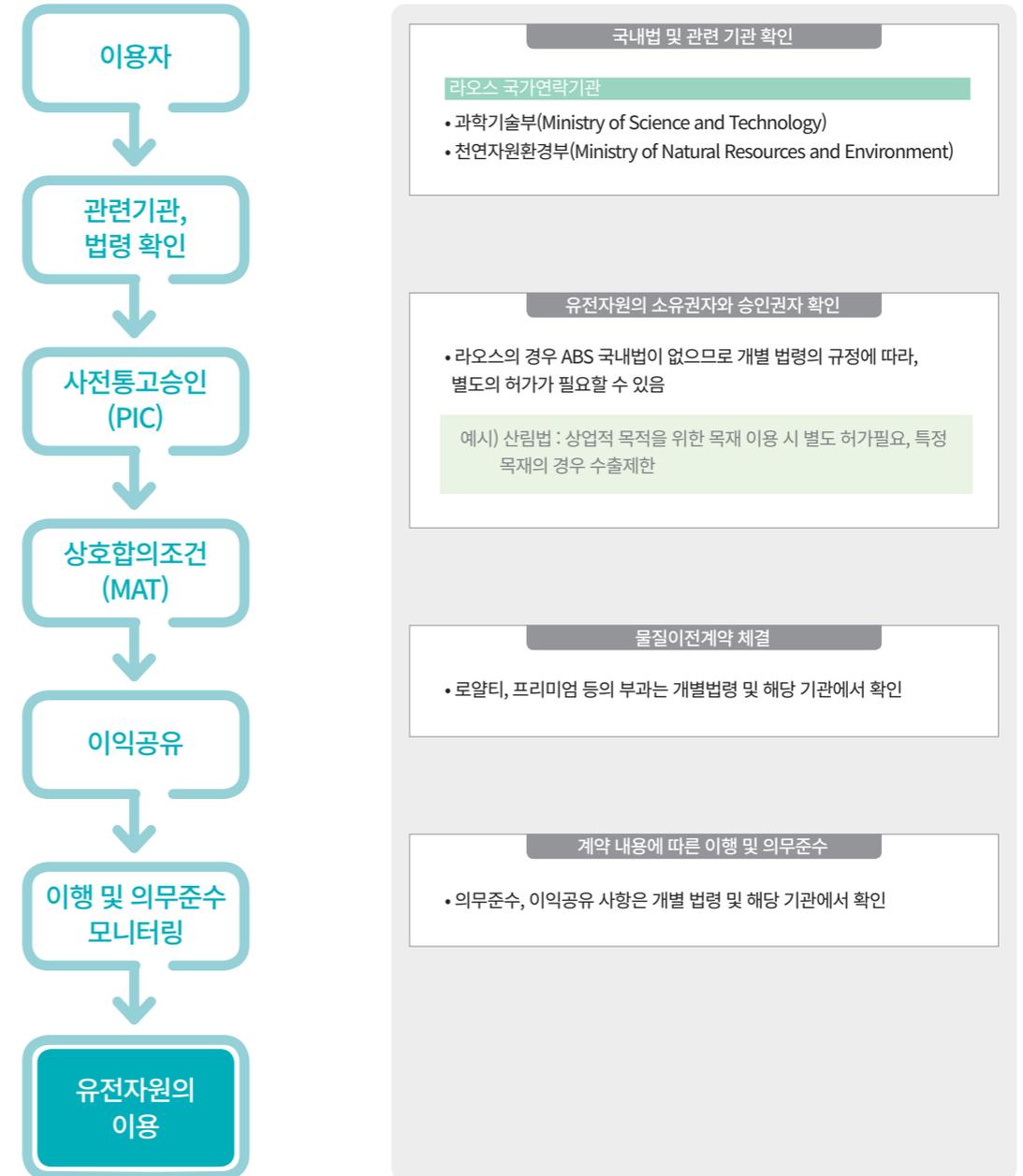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2. 9. 26.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4. 10. 12.
생물다양성협약 발효일	1996. 12. 19.
ABS 법령	없음
기타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Law, 2013)</li> <li>• 산림법(Forestry Law, 2007)</li> <li>• 해양및야생동물법(Aquatic and Wildlife Law, 2007)</li> <li>• 개정투자법(The Amendment to the Law on Investment, 2003)</li> <li>• 그 밖에, 산림자원이용 및 관행에 관한 명령(1996), 농림부령(1996), 임업법에 관한 대통령령(1996) 등에서 ABS 관련 내용을 규정</li> </ul>
ABS 적용대상과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유전자원</li> <li>※ 라오스의 경우 국내법에 유전자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나고야의정서 상의 일반 정의규정에 따릅니다.</li> </ul>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천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CNA)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천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담당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락기관 담당자 : Mr. Souriodong Sundara</li> <li>• E-mail : souriodong@yahoo.co.uk</li> <li>• Tel : +856 21 732207</li> <li>• FAX : +856 21 740630</li> </ul>
관련사이트	<p>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부 : <a href="http://www.most.gov.la">http://www.most.gov.la</a></li> <li>• 천연자원환경부 : <a href="http://www.monre.gov.la">http://www.monre.gov.la</a></li> </ul>

## ABS 관련 법령 주요내용

구분	내용
산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 벌목과 수확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며 벌목 방식이나 장소 등 정해진 규정에 따라야 함</li> <li>• 상업적 목적을 위한 목재의 벌목과 수확은 기반시설지역과 생산림 지역 내에서만 허용</li> <li>• 산림과 목재를 이용하여 경영하기를 원하는 개인, 가정, 기관은 산림과 산림지 관리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령에 따라 기업을 등록해야 함</li> <li>• 금지된 특별종 등 특정목재는 수출입이 제한됨</li> </ul>
개정 투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의 투자의 형태인 경영협력계약, 합작투자 및 민간투자의 절차 및 요건을 규정, 라오스 내에서 생물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외국인 투자법의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li>• 조립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에 의거하여 투자의 형태를 고려한 후 계약체결 필요</li> </ul>

※ ABS 법령은 지속적으로 제·개정 될 수 있으며, 최신 법령은 ABSC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BS 절차



※ 라오스는 ABS 국내법이 아직 없는 관계로 나고야의정서 일반절차 또는 기존과 같이 민사상 일반 계약형태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 시 국가연락기관을 통하여 개별적인 절차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 12



## 말레이시아 MALAYSIA

비준국 여부	미비준국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	생물자원 및 파생물, 전통지식
입장	유전자원 제공국
국가연락기관/ 연락처	천연자원환경부 생물다양성산림관리국 dr.megat@nre.gov.my

Malaysia



###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항

비준국 여부	미비준국
생물다양성협약 발효일	1994. 09. 22.
ABS 법령	2017년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Bill 2017)
기타 관련 법령	야생동물보호법(Wildlife Conservation Act 2010, No. 716) 1953년 동물법(Animals Act 1953, No. 647) 1985년 어업법(Fisheries Act 1985, No. 317) 1984년 국가산림법(National Forestry Act 1984, No. 313) 1997년 사바야생동물보호법(Sarah Wildlife Conservation Act 1997) 1998년 사라왁야생동물보호령(Sarawak Wildlife Protection Ordinance 1998) 2004년 신품종식물보호법(Protection of New Plant Varieties Act 2004, No 634) 2007년 바이오안전성법(Biosafety Act 2007, No 678) 2010년 야생동물보호법(Wildlife Conservation Act 2010, No. 716)
ABS 적용대상과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 생물자원 및 파생물, 전통지식</li> <li>• 생물자원 : 유전자원, 유기체, 생물체 일부, 미생물 및 그 일부와 그 개체군 및 파생물에 대한 실제 또는 잠재적 사용가치가 있는 생태계의 산물 및 기타 생물학적 요소와 이와 관련된 정보</li> <li>• 파생물 : 생물학적 자원으로부터 유래, 개발되거나 합성된 자연발생적 화학합성물을 포함하며, 생물학적 또는 유전자원의 부분, 조직 또는 추출물의 유전적 발현 및 신진대사의 결과로 기능적 단위를 포함 또는 불포함하는 화학물질 및 관련 정보</li> </ul>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천연자원환경부 생물다양성산림관리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NRE)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CNA)	지역별 14개 책임기관 지정([붙임] 참조)
담당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락기관 : 천연자원환경부 Dr. Megat Sany Bin Megat Ahmad Supian</li> <li>• E-mail : dr.megat@nre.gov.my</li> <li>• Tel : +603 8886 1443</li> <li>• FAX : +603 8890 4021</li> </ul>
관련사이트	<p>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자원환경부 : <a href="http://www.doe.gov.my">http://www.doe.gov.my</a></li> <li>• 국가정보센터(National CHM) : <a href="http://www.mybis.gov.my">http://www.mybis.gov.my</a></li> </ul>

[붙임] 말레이시아 책임기관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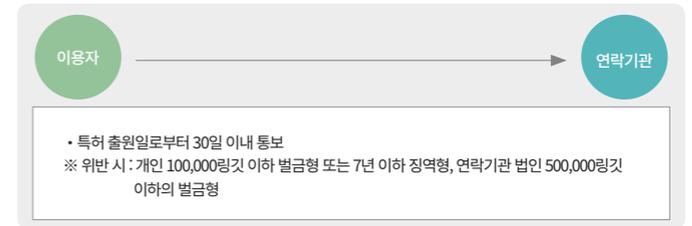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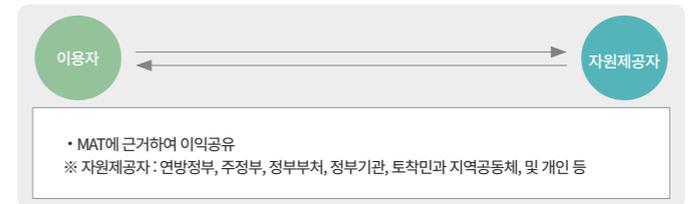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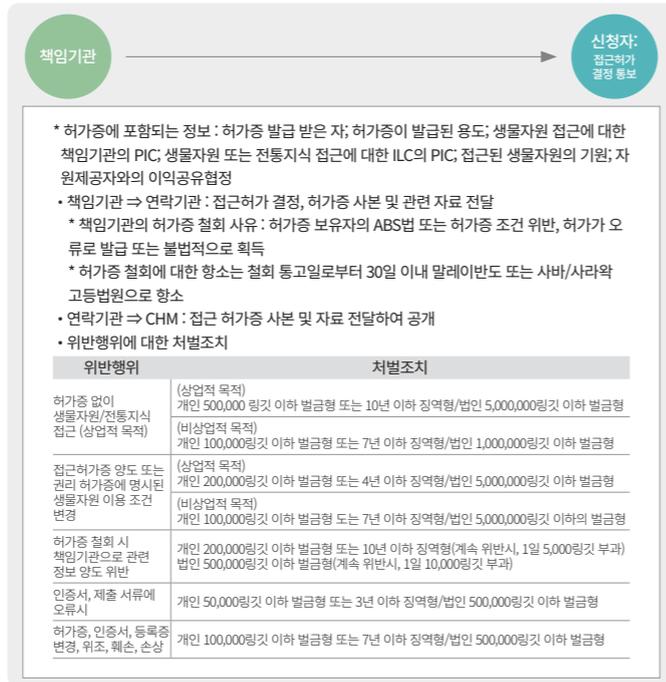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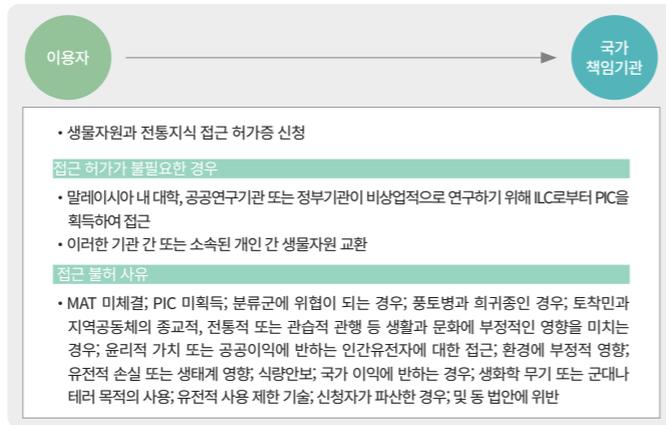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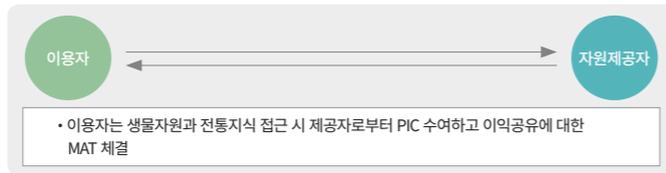
구분	책임기관	대상 생물자원	대상 지역
1	연방령부	2017년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의 대상인 모든 생물자원	쿠알라룸푸르, 라부안, 푸트라자야 연방령
2	조호르주 경제기획부서	2017년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의 대상인 모든 생물자원	조호르
3	케다주 경제기획부서	2017년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의 대상인 모든 생물자원	케다
4	켈란탄주 경제기획부서	2017년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의 대상인 모든 생물자원	켈란탄
5	말라카주 경제기획부서	2017년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의 대상인 모든 생물자원	말라카
6	네게리셀빌란주 산림국	2017년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의 대상인 모든 생물자원	네게리셀빌란
7	페낭주 경제기획과	2017년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의 대상인 모든 생물자원	페낭
8	페낭주 경제기획부서	2017년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의 대상인 모든 생물자원	페낭
9	페라크주 경제기획부서	2017년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의 대상인 모든 생물자원	페라크
10	페를리스주 경제기획부서	2017년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의 대상인 모든 생물자원	페를리스
11	셀랑고르주 경제기획부서	2017년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의 대상인 모든 생물자원	셀랑고르
12	테렝가누주 경제기획부서	2017년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의 대상인 모든 생물자원	테렝가누
13	사바 생물다양성 이사회	2017년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의 대상인 모든 생물자원	사바
14	도시개발자연자원부	2017년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의 대상인 모든 생물자원	사라왁

 ABS법 주요내용(2017년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

구분	내용
I부 도입 (제1절-제6절)	명칭 및 도입,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석, 생물자원 접근의 의미 등
II부 정부당국 (제7절-제11절)	연락기관과 그 기능, 책임기관과 그 기능, 자문위원회
III부 생물자원 접근 허가요건 (제12절-제23절)	상업적 또는 잠정적으로 상업적 목적에 대한 접근 허가신청과 허가 발급 및 비양도, 비상업적 목적에 대한 접근 허가 신청과 허가 발급, 통보 결정, 허가가 불필요한 경우, 생물자원 또는 생물자원 연구결과 양도, 이익공유협정, PIC과 MAT 요건
IV부 허가, 등록, 기록 및 처분 (제24절-제27절)	허가, 허가증 준수, 기록, 생물자원 처분
V부 허가취소와 항소 (제28절-제29절)	허가 취소, 허가취소에 대한 항소
VI부 감독과 추적 (제30절-제31절)	감독과 추적 조치, 지식재산권 출원
VII부 CHM (제32절-제33절)	국가생물다양성 CHM설립, 기밀정보
VIII부 사용자조치 (제34절)	다른 국가의 법률 지원조치
IX부 집행, 압류, 체포권한 (제35절-제49절)	집행담당관, 조사권, 인증카드, 건물 출입 권한, 전산화된 자료 접근, 물건 압류, 운송 금지/수색/점유 권한, 압류 통보, 운송의 잠정적 복구, 점유한 생물자원 몰수, 몰수한 생물자원의 재산, 점유한 생물자원의 해제, 점유 생물자원 보유비용, 압수 회복에 대한 비용 및 손해 보상 불가, 추가적인 권한
X부 일반사항 (제50절-제63절)	기금 지불, 위법형성, 기소기관, 신고서 오류, 법인의 위법, 협력업체/단체/고용인의 위법, 공공 고용인, 소송 및 법적 절차에 대한 보호, 정보제공자 보호, 보상, 면제 권한, 부칙 수정 권한, 규제 권한, 경과규정

※ ABS 법령은 지속적으로 제·개정 될 수 있으며, 최신 법령은 ABSC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BS 절차



 **관련서식**

**법정신고서**

비상업적 목적 허가를 위한 신청서

\_\_\_\_\_ [신청인 \_\_\_\_\_ 성명] \_\_\_\_\_ (NRIC번호/여권번호)은/는 \_\_\_\_\_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래의 사항을 엄숙하고 진지하게 선언합니다.

1. \_\_\_\_\_ [생물자원,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 접근 및 이용의 목적을 적으시오] 와/과 관련하여,

본인은

- (a) 제안 조치와 관련된 생물자원, 혹은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상업적 혹은 잠재적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 (b) 생물자원 혹은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연구 결과물을 책임기관에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
- (c) 수집한 생물자원의 분류학적 사본을 책임기관에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 (d) 생물자원을 책임기관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해당 기관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 (e) 본 법의 17(1)항에 따라 이익 공유에 관한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유전자원, 파생물, 생물자원을 구성하거나 생물자원에 함유된 것들,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상업적 혹은 잠재적 상업적 목적으로 본인 혹은 타인이 연구 혹은 개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 본인은 법정신고서에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한 경우 본 법의 55조에 의거하여 유죄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이 선언이 진실임을 믿으며 1960년 법정신고법(Statutory Declarations Act 1960)의 규정에 따라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상기인이 서명하고 서약함

\_\_\_\_\_ 신청인 서명  
.....

\_\_\_\_\_ 에서  
\_\_\_\_\_ 주에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본인 앞에서,

.....  
(법원판사, 치안판사, 혹은 선서 임회관)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미얀마**  
MYANMAR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4. 1. 8.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4. 10. 12.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	유전자원
입장	유전자원 제공국
국가연락기관/연락처	천연자원환경부/ 산림부 hlamaungthein.env@gmail.com

##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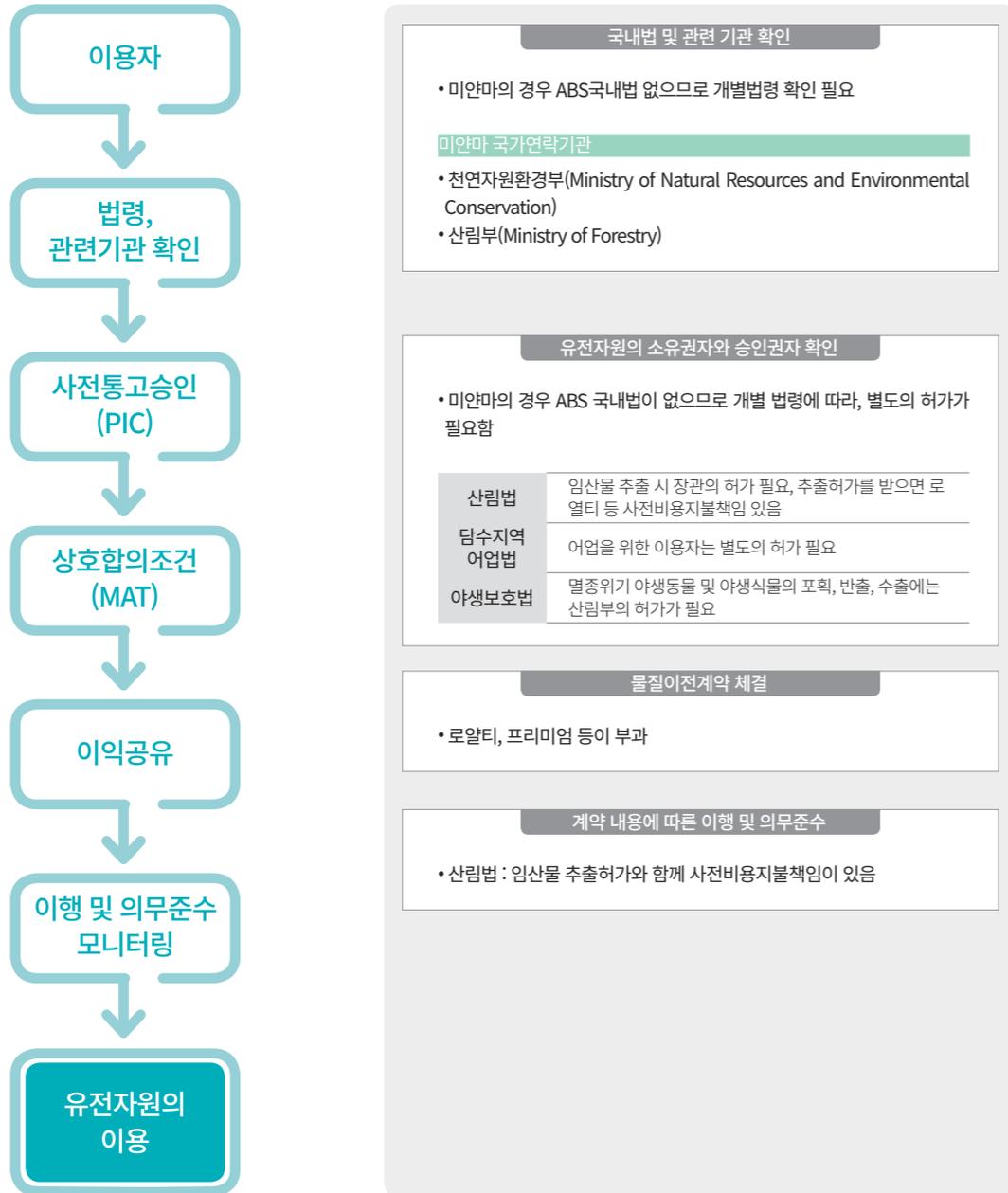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4. 1. 8.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4. 10. 12.
생물다양성협약 발효일	1995. 2. 23.
ABS 법령	없음
기타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수지역어업법(The Freshwater Fisheries Law, 1991)</li> <li>산림법(The Forest Law, 1992)</li> <li>야생동물보호 및 보호구역에 관한 법률(The Protection of Wildlife and Protected Areas Law, 1994)</li> <li>야생 동식물 및 자연지역의 보호에 관한 법률(The Protection of Wildlife, Wild Plants and Conservation of Natural Areas Law, 1994)</li> <li>비료법(Fertilizer Law, 2002)</li> <li>수자원 및 하천 보전법(Conservation of Water Resources and River Law, 2006)</li> <li>종자법(Seed Law, 2011)</li> <li>환경보전법(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2012)</li> <li>동물건강발전법(Animals Health and Development Law, 2012)</li> </ul>
ABS 적용대상과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유전자원</li> <li>※ 미얀마의 경우 국내법에 유전자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나고야의정서 상의 일반정의규정에 따릅니다.</li> </ul>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천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산림부(Ministry of Forestry)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CNA)	천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산림부(Ministry of Forestry)
담당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연락기관 담당자 : Mr. Hla Maung Thein</li> <li>E-mail : hlamaungthein.env@gmail.com</li> <li>Tel : +95 67 405 381</li> <li>FAX : +95 67 405 391</li> </ul>
관련사이트	<p>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연자원환경부 : <a href="http://www.moecaf.gov.mm/">http://www.moecaf.gov.mm/</a></li> <li>천연자원환경부 : <a href="http://www.mining.gov.mm/default_eng.asp">http://www.mining.gov.mm/default_eng.asp</a></li> </ul> <p>※ 미얀마의 경우 천연자원환경부의 홈페이지를 2개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p>

## ABS 관련 법령 주요내용

구분	내용
산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업적 목적의 산림 개발 또는 임산물 채취를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책임자는 허가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음</li> <li>임산물 추출 허가를 받으면 이에 대한 로열티, 보증금 및 사전비용 지불 책임이 발생하며 허가 마크 또는 등록된 재산마크 부착 의무가 있음</li> </ul>
담수지역어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업을 위해 이용자는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함</li> <li>어장 운영 허가시 어업 관련 연구를 무상으로 실시할 의무가 발생함</li> </ul>
국경지대 및 지역발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수민족들의 문화, 언어 및 관습의 보전을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수민족의 문화, 언어, 관습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수행</li> </ul>
야생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의 야생생물과 식물보호정책의 이행 및 자연지역 보전을 위한 정책 이행</li> <li>야생생물, 야생식물, 살아있는 생물 및 비생물체, 철새의 보존과 관련하여 국가가 채택한 국제협약을 수행</li> <li>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및 야생식물과 그 서식지를 보호</li> <li>멸종위기의 야생동물과 야생식물을 포획, 반출,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림부의 허가가 필요</li> <li>야생동물의 해외반출 시 산림부 국장의 허가서 필요</li> </ul>
미얀마 투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은 목재, 대나무, 사탕수수, 등나무 등 임산물의 생산과 조립은 미얀마 투자법에 따라야 함</li> <li>임업분야와 관련된 경제활동의 유형을 제한</li> </ul>

※ ABS 법령은 지속적으로 제·개정 될 수 있으며, 최신 법령은 ABSC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BS 절차



※ 미얀마는 ABS 국내법이 아직 없는 관계로 나고야의정서 일반절차 또는 기존과 같이 민사상 일반 계약 형태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 시 국가연락기관을 통하여 개별적인 절차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베트남 VIETNAM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4. 4. 23.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4. 10. 12.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	유전자원 및 파생물
입장	유전자원 제공국
국가연락기관/연락처	천연자원환경부 hnhan@vea.gov.vn

##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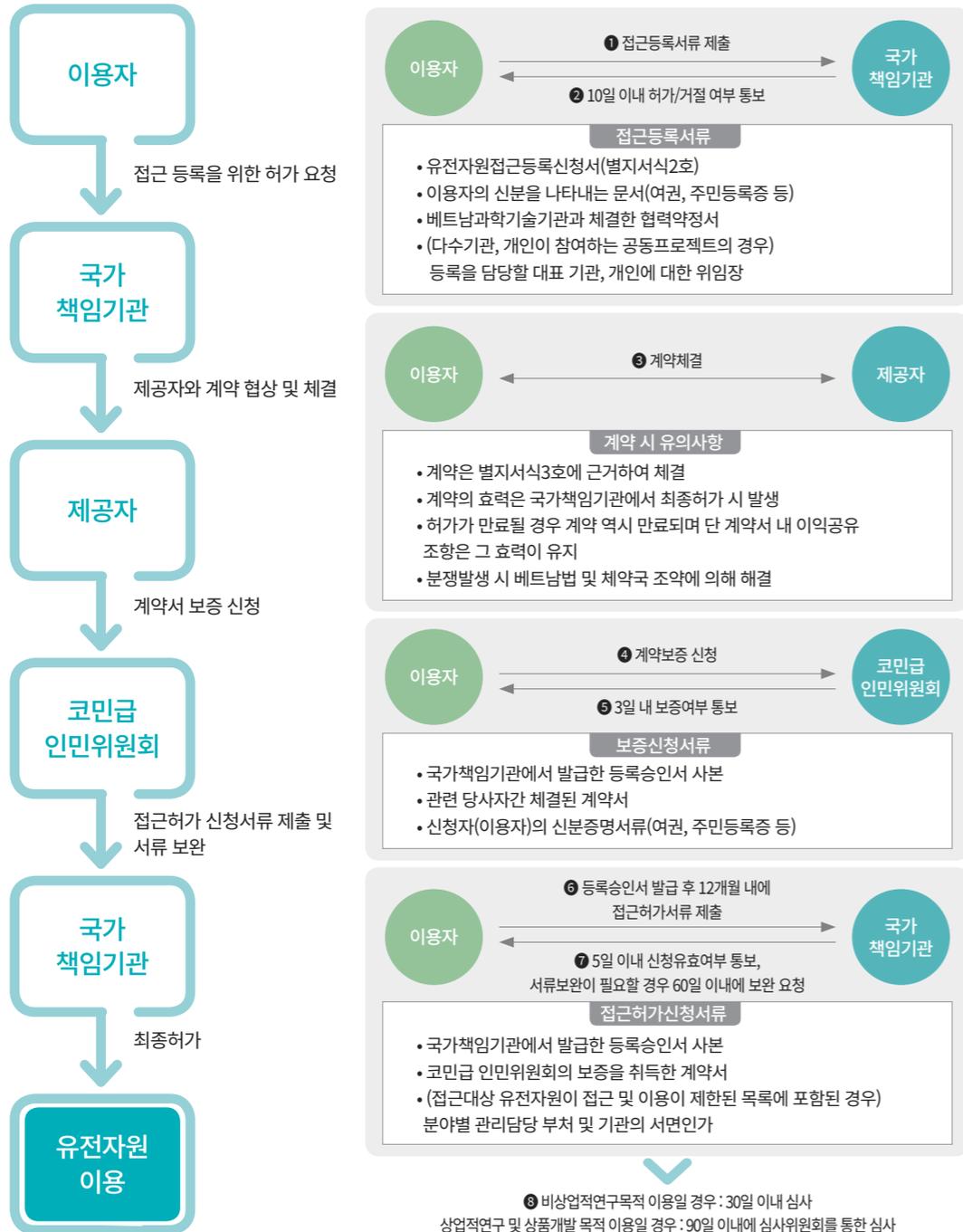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가입일	2014. 4. 23.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4. 10. 12.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1994. 11. 16.
ABS 법령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칙령(No.59/2017/ND-CP)
기타 관련 법령	생물다양성법(No.20/2008/QH12) 생물다양성법 시행세칙(No.65/2010/ND-CP) 계약법(2016) 과학기술부령(01/2007/TT-BKHCHN) 환경보호법(No.52/2005QH11) 환경보호법 시행세칙(No.80/2006/ND-CP) 자원환경 데이터의 수집, 관리, 사용에 관한 정부의정서(No.102/2008/ND-CP)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과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원 : 자연보전지역, 생물다양성 보전시설 및 과학연구, 기술개발시설의 모든 종의 유전자 검체</li> <li>• 파생물 :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li> </ul>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천연자원환경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MoNRE)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CNA)	천연자원환경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MoNRE) 농업농촌발전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담당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락기관 담당자 : Ms. Nhan Thi Thanh Hoang</li> <li>• E-mail : hnhan@vea.gov.vn /hoanghan.bca@gmail.com</li> <li>• Tel : +84 4 37956868</li> <li>• Fax : +84 4 39412028</li> </ul>
관련사이트	<p>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자원환경부 : <a href="http://vea.gov.vn/vn/Pages/trangchu.aspx">http://vea.gov.vn/vn/Pages/trangchu.aspx</a></li> <li>• 천연자원환경부 생물다양성보전부 : <a href="http://vea.gov.vn/vn/quanlymt/baotondadangsh/Pages/trangchu.aspx">http://vea.gov.vn/vn/quanlymt/baotondadangsh/Pages/trangchu.aspx</a></li> </ul> <p>ABS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정보기술부(법령확인) : <a href="http://www.moj.gov.vn/pages/vbpq.aspx">http://www.moj.gov.vn/pages/vbpq.aspx</a></li> </ul>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생명공학CH포털 : <a href="http://antoansinhhoc.vn/en/">http://antoansinhhoc.vn/en/</a></li> </ul>

## ABS 법 주요내용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칙령)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 제5조)	규제의 범위, 적용대상, 용어의 해석,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 원칙,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국가연락기관
제2장 유전자원 접근 허가 발급, 갱신 및 취소 (제6조-제20조)	유전자원 접근 허가발급, 갱신 및 취소 관할 국가책임기관, 접근 등록 및 허가발급 신청 대상, 접근 등록 및 허가발급 신청요건, 유전자원 접근 등록,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 협상 및 체결,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계약 보증, 접근허가 신청서류, 접근허가 심사 및 발급, 유전자원의 이용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권의 등록,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 접근허가 내용 및 존속기간, 접근허가 갱신, 접근허가 취소, 접근허가 갱신신청서류 심사비용, 국외반출을 위한 요건
제3장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제21조-제23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종류, 금전적 이익공유, 비금전적 이익공유
제4장 공지 및 보고 (제24조-제25조)	국제인정 의무준수인증서 공개, 이행보고서
제5장 이행조항 및 실행규정 (제26조-제28조)	유전자원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국가관리책임, 경과규정, 시행
첨부서식	제1호서식: 유전자원 접근허가를 신청하는 개인에 대한 과학기술기관 보증서 제2호서식: 유전자원 접근 신청서 제3호서식: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 제4호서식: 유전자원 접근 허가에 대한 결정문(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제5호서식: 유전자원 접근 허가 갱신신청서 제6호서식: 유전자원 접근 허가 갱신에 대한 결정문 제7호서식: 유전자원 접근 허가 취소에 대한 결정문 제8호서식: 비상업적 목적의 학술/연구를 위한 유전자원국외반출신청서 제9호서식: 비상업적 목적의 학술/연구를 위한 유전자원 국외반출 허가 결정문

※ ABS 법령은 지속적으로 제·개정 될 수 있으며, 최신 법령은 ABSC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BS 절차



## 관련서식(별지서식 1호 접근허가를 신청하는 개인에 대한 과학기술기관 보증서)

제1호 서식

### 보증기관명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참조 : \_\_\_\_\_ (장소) 날짜 : \_\_\_\_\_

수신인 : (국가책임기관)

### 보증기관

• 기관명 : \_\_\_\_\_ • 주소 : \_\_\_\_\_  
 •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관설립증번호 : \_\_\_\_\_ • 발급일 : \_\_\_\_\_ • 발급처 : \_\_\_\_\_  
 • 허가과학기술분야 : \_\_\_\_\_  
 • 대표자 : \_\_\_\_\_ • 직위 : \_\_\_\_\_  
 • 전화번호 : \_\_\_\_\_ • 팩스 : \_\_\_\_\_

### 피보증인

• 성명 : \_\_\_\_\_  
 •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신분증번호 : \_\_\_\_\_ • 발급일 : \_\_\_\_\_ • 발급처 : \_\_\_\_\_  
 • 직장명 : \_\_\_\_\_ • 주소 : \_\_\_\_\_  
 • 전문분야 : \_\_\_\_\_ • 전화번호 : \_\_\_\_\_ • 팩스 : \_\_\_\_\_  
 • 이메일주소 : \_\_\_\_\_

(피보증인성명) \_\_\_\_\_ : 피보증인은 현재 \_\_\_\_\_ 의 직위로 (보증기관명) \_\_\_\_\_ 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보증기관명) \_\_\_\_\_ 은 (제공자명) \_\_\_\_\_ 및 (접근자명) \_\_\_\_\_ 간 (날짜) \_\_\_\_\_ 에 체결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 제 \_\_\_\_\_ 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보증인명) \_\_\_\_\_ 의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 (피보증인명)에 대한 보증을

승인하는 바입니다. (피보증인명) \_\_\_\_\_ 이 이 계약서 제 \_\_\_\_\_ 호에 따른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명) \_\_\_\_\_

은 상기 계약에 따른 (피보증인명) \_\_\_\_\_ 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대리 이행할 것을 보증합니다. 본 보증서는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보증서의 사본은 \_\_\_\_\_ 부 작성되었으며, 양도 및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본 보증서는 베트남법에 의해 규제되고 해석됩니다.

### 수신인

• 상기 등일 : \_\_\_\_\_  
 • \_\_\_\_\_  
 • 아카이브 : \_\_\_\_\_

**보증기관의 법정대리**  
(직위, 성명, 서명 및 법인 날인)

 **관련서식**(별지서식 2호 유전자원 접근 신청서)

제2호 서식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유전자원 접근 신청서**

수신인 : (국가책임기관)

**1. 신청인**

- 기관 : 기관명; 사업자허가증 또는 기관설립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연락 담당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 개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신분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 + 자격요건 및 전문분야
  - + 소속 과학기술기관 정보: 기관명; 기관 사업자허가증 또는 기관설립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팩스

**2. 신청 내용**

- 유전자원 (일반명, 기타명, 학명)
- 접근 대상 유전자원의 예상 수량/용량 (유전자원 표본 수, 수량/용량)
- 유전자원 접근 목적
  - 비상업적 연구
  - 상업적 연구
  - 상품 개발
- 예상 접근 기간 : \_\_\_\_\_부터 \_\_\_\_\_까지 (최장 3년)
- 접근 예정지 :
- 예상 제공자 :
  - 제공자에 대한 정보 (해당할 경우 작성) :
  - 제공자 추천 소개 요청
- 수행 활동 (해당할 경우 작성) :
  - 베트남 영토 밖으로 유전자원 반출
  - 접근 의도에 대한 변경 없이 제3자 이전

**3. 예상 접근 방법 :**

- 기간 (시작 및 종료 시간) :
- 접근 방법 (수단, 도구, 장비) :
- 접근 예정지 (야생 서식지, 생물다양성 보전시설, 컬렉션) :
- 유전자원에 대한 조사·수집을 수행하는 국내 기관 및 내국인 (상세 개인/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 :

**4.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 이용 (해당할 경우 작성)**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의 예상 용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5. 첨부 문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 \_\_\_\_\_./2017/ND-CP호(2017.5.) 제9조 제2항에 명시된 서류 및 해당 시 기타 서류)

**6. 신청자 서약**

(개인/기관명)은 본 서식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바이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할 것 입니다.

상기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신청자" \_\_\_\_\_가 유전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 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장소), 날짜 \_\_\_\_\_  
**신청자 대리인**  
(직위, 성명, 서명 및 법인 날인)

## 관련서식(별지서식 3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

제3호 서식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 (제 \_\_\_\_\_호/ 제공자-접근자)

-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에 의거하여,
  - 민법 (2015)에 의거하여,
  - 생물다양성법 (2008)에 의거하여,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 \_\_\_\_\_/2017/ND-CP호(2017. . . )에 의거하여,
  - 양 당사자의 요청사항에 따라,
- (날짜) \_\_\_\_\_ (장소) \_\_\_\_\_ 에서 본 계약서가 다음 당사자 간 체결되었다.

#### 유전자원 제공자인 개인/기관명 (이하 "제공자")

- 기관: 기관명; 사업자허가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설립증 또는 유전자원이 접근된 토지·수면이용권 증서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연락 담당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신분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유전자원이 접근된 토지·수면이용권 증서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 및

#### 유전자원 접근자인 개인/기관명 (이하 "접근자")

- 기관: 기관명; 사업자허가증 또는 기관설립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연락 담당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 개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신분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 + 자격요건 및 전문분야
- + 소속 과학기술기관 정보: 기관명; 기관 사업자허가증 또는 기관설립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팩스

(공동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수행 시 유전자원을 제공 또는 접근하기 위해 다수의 기관 또는 개인이 참여할 경우, 해당 기관 및 개인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으로 협상하며, 공동으로 조건에 합의하고, 공동으로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 양 당사자는 다음 조항에 대해 동의한다.

**제1조.** 제공자와 접근자는 다음과 같은 특정 정보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다.

1. 접근대상 유전자원: 일반명, 학명 및 기타명
2. 접근대상 유전자원 표본: 접근 방법, 수량/용량, 유전자원의 부피: 표본 수, 수량/용량, 개체
3. 유전자원 접근목적: 비상업적 연구, 상업적 연구, 상품 개발 중 해당하는 목적에 대해 명시
4. 기간: (예상 접근 기간: \_\_\_\_\_부터 \_\_\_\_\_까지 (최장 3년간))
5. 접근장소
6.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접근 예정지
7.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예상 용도 (해당할 경우)
8. 유전자원 국외 반출 계획 (해당할 경우)
9. 기타 합의사항

(첨부 유전자원 접근계획 참조)

#### 제2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공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접근자 및 제공자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 \_\_\_\_\_/2017/ND-CP호(2017. . . )의 서식 및 이익공유 규정을 기반으로 하여 협상할 것이다.

#### 제3조. 접근자의 의무

1.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 국가책임기관이 발급한 유전자원 접근 허가 취득 후 유전자원 접근 계획에 한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조사 및 수집 활동을 수행한다.
  - 본 계약서 제1조에 명시된 유전자원에 한하여 접근한다.
2. 유전자원에 대한 이용과 관련하여
  - 본 계약서에 명시된 접근 목적에 한하여 유전자원을 이용한다.
  - 상품 개발의 경우 접근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규정에 따라 유전자원에 기반한 제품의 이용 및 상업화로 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한 정보를 국가책임기관 및 제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3. 의도의 변경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 \_\_\_\_\_/2017/ND-CP호(2017. . . )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유전자원의 접근에 기반한 혁신적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결과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경우 접근자는 제공자의 유전자원에 대한 출처 또는 원산지를 보장해야 한다.
  - 접근된 유전자원에 기반한 혁신적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상업화를 추진할 경우 접근자는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이익공유를 보장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 \_\_\_\_\_/2017/ND-CP호(2017. . . ) 제22조 제2항에 정의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 접근된 유전자원의 제3자 이전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 \_\_\_\_\_/2017/ND-CP호(2017. . . )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6. 이익공유 :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라 이익공유를 이행한다.
7. 공지 및 보고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관한 본 칙령의 규정에 따라 보고체계 운영
8. 규정에 따라 제공자 및 관련 당사자에 수수료, 요금 및 세금 납부
9. 상호합의에 따른 기타 의무사항

#### 제4조. 제공자의 의무

1. 요청 시 유전자원 접근 허가 신청 절차 중 접근자와 조율
2. 본 계약서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용자에게 유전자원을 제공
3. 상호합의에 따른 기타 의무사항

#### 제5조. 분쟁해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공유와 관련된 본 계약서와 관련한 모든 분쟁은 베트남법 조항 및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계약국으로 가입된 조약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 제6조. 보고 및 회계

접근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회계 자료 및 보고서를 보관하고 정확하게 업데이트하는 의무를 지닌다. 접근자의 의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진행된 거래
2. 영수증 및 청구서에 대한 별도 보고서
3. 회계 자료는 확인을 위해 사용 및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AP) 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유전자원/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의 개발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한 보고서 및 자료는 정확한 지급을 위해 접근 가능해야 한다.
5. 접근자는 표본과 관련된 회계 자료 및 보고서를 본 계약 만료 또는 종료 후 \_\_\_\_\_년간 기록 보관소에 보관하고, 본 계약 기간 이전에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이를 저장해야 한다.
6. 기타 합의사항

상기 언급된 사항 이외에 특정 사례에 따라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 세금, 수수료
- 법에 따른 비밀유지약정서
- 보험
- 파일 및 자료에 대한 접근
- 본 계약의 개정 및 보완
- 본 계약의 종료 및 청산
- 불가항력
- 기타 관련사항

본 계약서의 원본은 \_\_\_\_\_부(각 \_\_\_\_\_페이지) 작성되었다. 각 당사자는 \_\_\_\_\_부를 보관하며, 국가책임당국에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접근자**  
(직위, 성명, 서명 및 법인 날인)

**제공자**  
(직위, 성명, 서명 및 법인 날인)

(접근자)\_\_\_\_\_ 및 (제공자)\_\_\_\_\_ 간 (접근장소 또는 제공자의 등록주소지)\_\_\_\_\_에서 체결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

원본 1부는 코윈급 인민위원회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해야 한다.

(장소),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코윈 인민위원회  
위원장**  
(서명, 성명, 날인)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세부계획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의 첨부문서)

#### 1. 유전자원에 대한 일반 정보

- 접근대상 유전자원 : 일반명, 학명 및 기타명
- 접근대상 유전자원 표본
- 접근대상 유전자원의 수량/용량, 표본 수, 수량/용량, 무게, 개체\_\_\_\_\_
- 유전자원 접근목적
- 기간: (예상 접근 기간: \_\_\_\_\_부터 \_\_\_\_\_까지 (최장 3년간))
- 접근 예정지 :
- 야생 서식지에서의 접근 :

+ 위치: 대지, 산림 하위지구 및 기타 생태계에 대한 지리적 좌표

+ 경계: 도표 및 최소 축척 1:10,000의 지도를 첨부한 자연적 경계에 대한 설명

+ 접근 예정지의 넓이

+ 접근대상 지역의 생태계 및 동식물 현황

- 생물다양성 보전시설 및 컬렉션에서의 접근 :

생물다양성 보전시설 및 컬렉션에서 접근 예정인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 (유전자원 수집 기간 및 장소)

#### 2. 접근 방법

- 접근 방법 및 이행 방법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수단, 도구, 기구: 수집 기간/세션)
- 수집과정에 참여한 내국인 및 국내기관 (개인/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

#### 3. 유전자원이 보전 및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평가

- 생물다양성, 생태계 및 사회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접근장소에서 수행된 영향평가
- 이와 같은 영향을 방지 및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 제시

#### 4. 유전자원 이용계획

- 유전자원에 대한 이용 목적 및 예상 결과
  - 유전자원의 특성, 가치, 이익을 포함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에 대한 사항 (해당 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유전자원을 관리하는 제공자와 전통지식의 제공자가 다를 경우 전통지식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및 개인에 대해 명시)
  -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의 파생물에 기반한 상품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기관 및 내국인 (개인/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 상세히 기재)
  -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의 파생물에 기반한 상품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이 예정된 장소
  - 수행 활동 (해당할 경우 작성)
-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영토 이외의 지역으로 유전자원 반출 (수량/부피, 베트남 영토 이외의 지역으로의 유전자원 반출 횟수에 대한 상세 정보)
- + 의도의 변경 없이 제3자에게 유전자원 이전  
(유전자원을 수령할 기관 및 개인, 유전자원의 국외 반출 예정일, 예상 용도에 대한 정보 첨부)

#### 5.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공유에 대한 서약

(접근자 및 제공자 간 체결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상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방법 및 이행)

 **관련서식**(별지서식 4호 유전자원 접근 허가에 대한 결정문)

제4호 서식

<p><b>국가책임기관</b></p> <p>제_____ / QD _____ 호</p> <p><b>유전자원 접근 허가에 대한 결정문</b> (신청서참조번호 (날짜)_____)</p> <p>_____ 부 장관은</p> <p>인가된 국가기관의 기능, 직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대해 규정하는 정부 칙령 제_____/201.../ND-CP호 (201... )에 의거하여,</p> <p>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_____/2017/ND-CP호(2017... )에 의거하여,</p> <p>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 신청 서류를 고려하며 (개인/기관명),</p> <p>하위 상임기구의 요청에 따라,</p> <p><b>다음과 같이 결정한다.</b></p> <p><b>제1조.</b> 국가책임기관은 다음 대상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한다.                  - 기관: 기관명; 사업자허가증 또는 기관설립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연락 담당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 개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신분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자격요건 및 전문분야                  + 보증기관 정보: 기관명; 기관 사업자허가증 또는 기관설립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팩스                  + 번호 및 표기; 발급일 및 발급처; 보증서류명; 보증서류 발급기관명</p> <p><b>제2조.</b>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 범위                  1) 접근대상 유전자원: 일반명, 학명 및 기타명                  2) 접근대상 유전자원 표본: 접근대상 유전자원의 수량/용량                  3) 유전자원 접근목적</p>	<p><b>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b> <b>독립-자유-행복</b></p> <p>(장소), 날짜_____</p> <p>4) 예상 접근기간: _____부터 _____까지                  5) 접근 예정지:                  6) 제공자 (성명, 상세 연락처)                  7)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유전자원 관련 활동이 수행될 접근 예정지                  8)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 이용에 대한 정보                  9)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영토 이외 지역으로의 유전자원 반출에 대한 정보</p> <p><b>제3조.</b> 기관/개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_____”의 목적(신청 목적)을 위한 유전자원의 이용                  2) 본 결정문에 따른 유전자원 접근 계획 이행                  3) (접근자)_____ 및 (제공자)_____가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하고 코윈 인민위원회가 _____년 _____월 _____일 보증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 내용 이행                  4) 베트남에서 유래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파생물의 접근 및 이용 시 보고 의무 및 기타 관련 규정 준수</p> <p><b>제4조.</b> 본 결정문은 서명일로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p> <p><b>제5조.</b> 하위 상임기구장 및 기관/개인 _____은 본 결정문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p> <p><b>수신인 :</b>                  - 제5조에 명시된 개인/기관 ;                  - 국가연락기관 ;                  - 코윈 인민위원회 ;                  - 아카이브 : 사무_____</p> <p style="text-align: right;"><b>장관</b> (서명 및 날인)</p>
--	--

4) 예상 접근기간: \_\_\_\_\_부터 \_\_\_\_\_까지  
 5) 접근 예정지:  
 6) 제공자 (성명, 상세 연락처)  
 7)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유전자원 관련 활동이 수행될 접근 예정지  
 8)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 이용에 대한 정보  
 9)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영토 이외 지역으로의 유전자원 반출에 대한 정보

**제3조.** 기관/개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_\_\_\_\_”의 목적(신청 목적)을 위한 유전자원의 이용  
 2) 본 결정문에 따른 유전자원 접근 계획 이행  
 3) (접근자)\_\_\_\_\_ 및 (제공자)\_\_\_\_\_가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하고 코윈 인민위원회가 \_\_\_\_\_년 \_\_\_\_\_월 \_\_\_\_\_일 보증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 내용 이행  
 4) 베트남에서 유래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파생물의 접근 및 이용 시 보고 의무 및 기타 관련 규정 준수

**제4조.** 본 결정문은 서명일로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 하위 상임기구장 및 기관/개인 \_\_\_\_\_은 본 결정문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수신인 :**  
 - 제5조에 명시된 개인/기관 ;  
 - 국가연락기관 ;  
 - 코윈 인민위원회 ;  
 - 아카이브 : 사무\_\_\_\_\_

**장관**  
(서명 및 날인)

 **관련서식**(별지서식 5호 유전자원 접근허가 갱신 신청서)

제5호 서식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유전자원 접근 허가 갱신 신청서

수신: 책임국가기관

**1. 일반 정보**

유전자원 접근 허가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 기관 : 기관명; 사업자허가증 또는 기관설립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연락 담당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 개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신분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 소속 과학기술기관 정보: 기관명; 기관 사업자허가증 또는 기관설립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팩스

국가책임기관장이 \_\_\_\_\_년 \_\_\_\_\_월 \_\_\_\_\_일 발행한 결정문 제\_\_\_\_\_/QD호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가 부여되었다.

**2.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현황 · 결과 개요**

**3. 유전자원 접근 허가 갱신 신청**

이유 (이유 및 설명): \_\_\_\_\_

연장 기간: \_\_\_\_\_부터 \_\_\_\_\_까지

**4. 본 신청서에 동봉된 서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_\_\_\_\_/2017/ND-CP호(2017. . . ) 제17조 제2항의 조항에 명시된 필요 서류 목록)

(신청 개인/기관명 )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법 앞에서 본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상기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신청자" \_\_\_\_\_에 대한 유전자원 접근 허가 갱신을 고려 및 허가 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장소), 날짜 \_\_\_\_\_.

**신청자**

(직위, 성명, 서명 및 법인 날인)

 **관련서식**(별지서식 6호 유전자원 접근 허가 갱신에 대한 결정문)

제6호 서식

**국가책임기관**

제\_\_\_\_\_/QD\_\_\_\_\_호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장소), 날짜 \_\_\_\_\_

유전자원 접근 허가 갱신에 대한  
결정문

\_\_\_\_\_부 \_\_\_\_\_관은

인가된 국가기관의 기능, 직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대해 규정하는 정부 칙령 제\_\_\_\_\_/201\_\_\_\_\_/ND-CP호 (201\_\_\_\_\_.\_\_\_\_\_.\_\_\_\_\_)에 의거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_\_\_\_\_/2017/ND-CP호(2017. . . )에 의거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 갱신 신청 서류를 고려하며 (기관명),

하위 상임기구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 본 결정문은 국가책임기관장이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를 부여한 결정문 제\_\_\_\_호(날짜) \_\_\_\_\_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이다.

제2조. 본 결정문은 \_\_\_\_\_장관이 \_\_\_\_\_년 \_\_\_\_\_월 \_\_\_\_\_일에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한 결정문 제\_\_\_\_\_/QD호를 준수해야 하며, 그 내용을 개정하지 않는다.

제3조. 본 결정문은 서명일로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하위 상임기구장 및 기관/개인 \_\_\_\_\_은 본 결정문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수신인:

- 제4조에 명시된 개인/기관;
- 국가연락기관;
- 코윈 인민위원회;
- 아카이브: 사무, \_\_\_\_\_.

**장관**

(서명 및 날인)

 **관련서식**(별지서식 7호 유전자원 접근허가 취소에 대한 결정문)

제7호 서식

**국가책임기관**  
제\_\_\_\_/QD\_\_\_\_호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장소), 날짜\_\_\_\_

유전자원 접근 허가 취소에 대한  
결정문

\_\_\_\_\_부 \_\_\_\_\_장관은

인가된 국가기관의 기능, 직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대해 규정하는 정부 칙령 제\_\_\_\_/2017\_\_\_\_  
/ND-CP호(2017. . .)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_\_\_\_/2017/ND-  
CP호(2017. . .)에 따라,

하위 상임기구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 본 결정문은 국가책임기관장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를 부여한 결정문 제\_\_\_\_호(날짜)\_\_\_\_를 취소하기  
위함이다.  
결정문 제\_\_\_\_호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가 부여된 (개인/기관명)\_\_\_\_은 즉시 베트남 내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중지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제2조** 본 결정문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하위 상임기구장 및 기관/개인\_\_\_\_은 본 결정문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수신인:  
- 제3조에 명시된 개인/기관;  
- 국가연락기관;  
- 코원 인민위원회;  
- 아카이브: 사무, 수신인:

**장관**  
(서명 및 날인)

 **관련서식**(별지서식 8호 비상업적 목적의 학술/연구를 위한 유전자원의 국외반출 신청서)

제8호 서식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비상업적 목적의 학술/연구를 위한 유전자원 국외 반출 신청서**

수신: 책임국가기관

**1. 국내 과학기술기관, 학생 및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정보:**

- 과학기술기관 : 기관명; 과학기술 활동 등록을 위한 기관 사업자허가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팩스
- 개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신분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학생 또는 박사과정 학생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기술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2. 유전자원 국외 반출 목적**

- 비상업적 연구
- 연구

**3. 국외 반출예정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

연번	항목	정보
1.	유전자원명	(일반명, 학명 및 기타명)
2.	접근장소	(주소, 유전자원이 수집된 장소의 좌표)
3.	기간	
4.	유전자원 표본	(접근 및 수집대상 부분)
5.	수집 수량/용량	
6.	수집방법	(수단, 장비, 도구)
7.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해당할 경우)	
8.	국외 반출 신청대상 유전자원 수량/부피	

**4. 제공자에 대한 정보**

- 기관: 기관명; 사업자허가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설립증 또는 토지·수면이용권 증서,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기관 연락 담당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 개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신분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유전자원이 접근된 토지·수면이용권 증서, 발급일 및 발급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5. 유전자원의 국외 이용에 대한 정보**

연구를 위해 협업 추진 및 유전자원을 수령할 국외 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

**6. 본 신청서에 동봉된 서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_\_\_\_/2017/ND-CP호(2017. . .) 제20조에 명시된 필요 서류 및 해당될 경우 기타 서류)

7. 서약

(과학기술기관명/학생명/박사과정학생명)은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한다.

- 비상업적 목적의 학술/연구에 한하여 반출예정인 유전자원을 사용한다.
- 유전자원의 제3자 이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_\_\_\_\_/2017/ND-CP호(2017. . .)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고 의무를 준수한다.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법 앞에서 본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해 보증하고 그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진다.

비상업적 목적의 학술/연구를 위하여 상기 명시된 유전자원의 국외 반출에 대한 "신청자"\_\_\_\_\_의 요청을 고려 및 허가 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장소), 날짜 .....  
**신청자**  
(직위, 성명, 서명 및 법인 날인)

 **관련서식**(별지서식 9호 비상업적 목적의 학술/연구를 위한 유전자원 국외 반출 허가 결정문)

제9호 서식

국가책임기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제\_\_\_\_\_.QD\_\_\_\_\_호

(장소), 날짜\_\_\_\_\_.

**비상업적 목적의 학술/연구를 위한 유전자원 국외 반출 허가  
결정문**

\_\_\_\_\_부\_\_\_\_\_장관은

인가된 국가기관의 기능, 직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대해 규정하는 정부 칙령 제\_\_\_\_\_/201\_\_\_\_/ND-CP호 (201.. .)에 의거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_\_\_\_\_/2017/ND-CP호(2017. .)에 의거하여,

(국내 과학기술기관/개인)\_\_\_\_\_,의 비상업적 목적의 학술/연구를 위한 유전자원의 국외 반출 신청에 따라,

(하위 상임기구명)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 국외 반출이 허가된 과학기술기관/개인에 대한 정보**

- 과학기술기관 : 기관명; 과학기술 활동 등록을 위한 기관 사업자허가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팩스
- 개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신분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학생 또는 박사과정 학생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기술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2조.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

- 1) 접근대상 유전자원: 일반명, 학명 및 기타명
- 2) 접근대상 유전자원 표본
- 3) 제공자 정보
- 4) 접근장소
- 5) 베트남 외부로 반출예정인 유전자원의 수량/용량
- 6) 유전자원이 이용될 국외 예정지 (연구기관명, 연수기관, 상세 연락처)

**제3조. 허가에 따른 (과학기술기관명/개인명)의 의무**



# 부탄 BHUTAN

1) (비상업적 목적의 학술/연구)\_\_\_\_\_에 한하여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예정인 유전자원을 사용한다.

2) 반출대상 유전자원의 제3자 이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_\_\_\_\_/2017/ND-CP호(2017. . . ) 및 기타 관련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고 의무를 준수한다.

제4조. 본 결정문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 하위 상임기구장 및 (과학기술기관명/개인명\_\_\_\_\_은 본 결정문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수신인:  
- \_\_\_\_\_;  
- 관세청 ;  
- 아카이브 : 사무 : \_\_\_\_\_

**장관**  
(서명 및 날인)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3. 9. 30.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4. 10. 12.
ABS 적용대상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파생물
입장	유전자원 제공국
국가연락기관/연락처	국가환경위원회, 농업산림부 국가생물 다양성센터 kc@nec.gov.bt

##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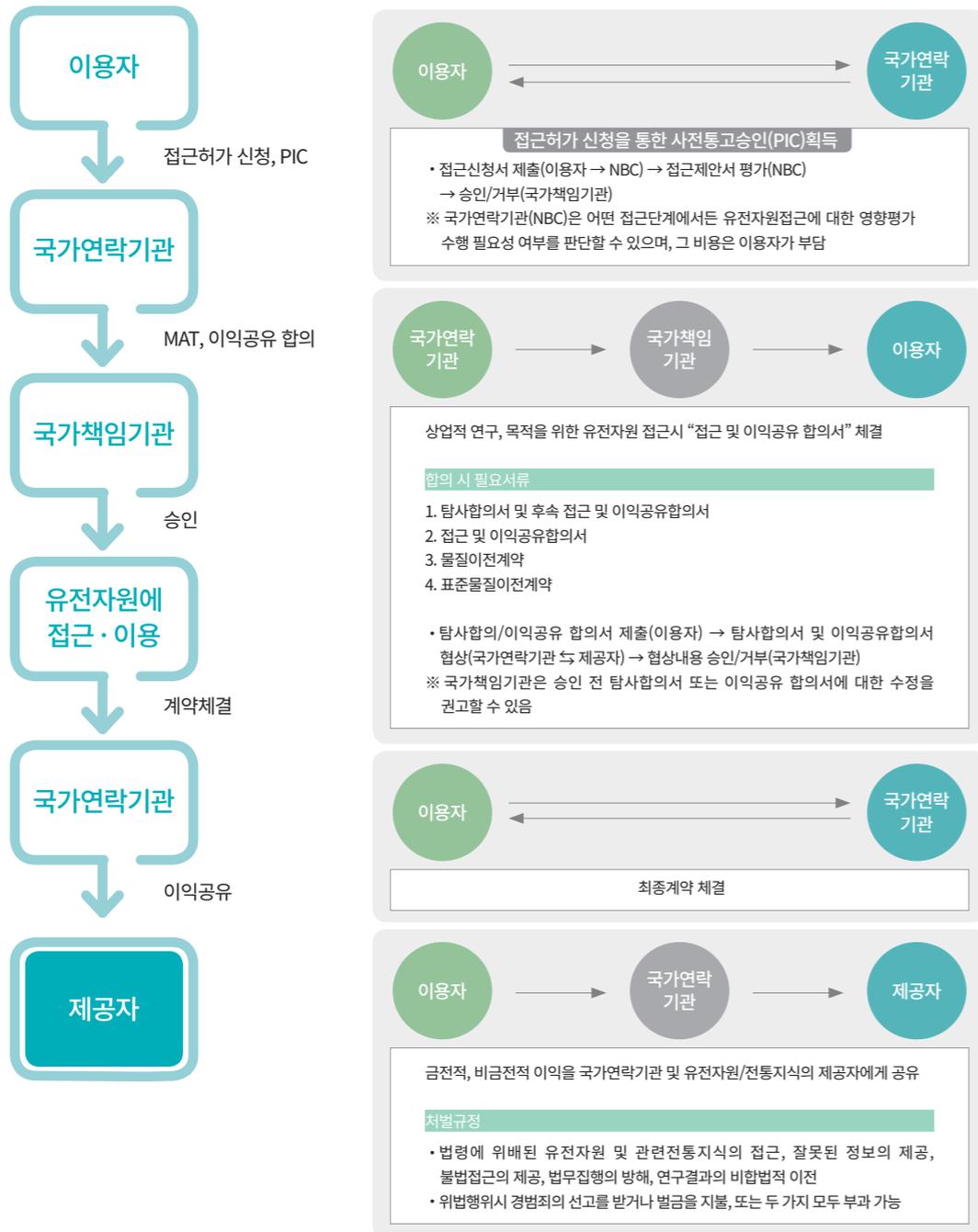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3. 9. 30.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4. 10. 12.
생물다양성협약 발효일	1995. 11. 23.
ABS 법령	부탄 생물다양성법(안) (Biodiversity Bill of Bhutan, 2016)
기타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탄왕국 헌법</li> <li>• 부탄 산림 및 자연보전법(1995)</li> <li>• 생물다양성법(2014)</li> </ul>
ABS 적용대상과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적용대상</b>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파생물</li> <li>• <b>유전자원</b> :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모든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여타 근원이 되는 물질로서 유전자원의 생화학적 구성과 유전정보의 저장방식과 무관한 유전정보를 포함하며, 유기체와 파생물에서 유전적물질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대한 지식여부와 무관함</li> <li>• <b>부탄 유전자원</b> : 부탄 영토내에서 발견된 유전자원이며 부탄이 원산지이나 부탄외에서 발견된 유전자원을 포함</li> <li>• <b>파생물</b> : 생물학적 자원이나 유전자원의 유전적 표현 또는 물질대사에 따라 발생하는 생화학적 혼합물로서 자연발생, 합성 또는 여타 방법에 의한 생산방식 등을 모두 포함하며, 유전관련 기능적 단위 포함여부와 무관함</li> <li>• <b>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b> : 어떠한 생물학적 그리고 유전적 자원 또는 그 일부의 용도, 특성, 가치 및 절차와 관련되어 공동체 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 혁신 그리고 관행을 의미</li> </ul>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환경위원회(National Environment Commission)</li> <li>• 농업산림부 국가생물다양성센터(The National Biodiversity Centr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s)</li> </ul>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C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산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s)</li> </ul>
담당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락기관 담당자 : Mr. Karma C. Nyedrup</li> <li>• E-mail : kc@nec.gov.bt</li> <li>• Tel : +975 17646566</li> <li>• FAX : +975 2 323 385</li> </ul>
관련사이트	<p>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산림부 : <a href="http://www.moaf.gov.bt/">http://www.moaf.gov.bt/</a></li> <li>• 국가생물다양성센터(NBC) : <a href="http://www.nbc.gov.bt/">http://www.nbc.gov.bt/</a></li> </ul> <p>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정보/D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탄 생물다양성 포털 : <a href="http://biodiversity.bt/">http://biodiversity.bt/</a></li> </ul>

## ABS 법령 주요내용(부탄 생물다양성법(안))

구분	내용
제1장 서문	법안명칭, 폐지, 적용, 목표
제2장 관할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책임기관의 기능, 국가연락기관, 국가연락기관의 기능, 위원회
제3장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제공자, 제한된 유전자원
제4장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접근제안서, 사전통고승인, 기타 허가와의 관계, 탐사합의서 및 접근 및 이익공유 합의서, 탐사합의서, 접근 및 이익공유 합의서, 국제인정의무준수인증서, 물질이전계약, 식량과 농업을 목적으로 한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물질이전증명서
제5장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문서화의 보호, 공동체 규약,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자, 전통지식 접근, 탐사합의서, 접근 및 이익공유 합의서
제6장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이익공유의 기본원칙,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의 포함, 이익공유펀드
제7장 부탄의 접근 및 이익공유 펀드	부탄의 접근 및 이익공유 펀드, 펀드의 목적, 펀드에 대한 기여, 투자, 계정과 감사
제8장 등록, 기록 및 처리	등록, 기록, 유전자원의 처리
제9장 집행권한	집행권, 수사권한, 체포권한, 출입·수색 및 압류권한, 디지털 정보의 접근, 전달매체를 저지, 검색 및 압류할 수 있는 권한, 영장 없는 수색과 압류
제10장 위법행위와 처벌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잘못된 정보의 제공, 불법접근의 제공, 범무집행의 방해, 연구결과의 불법적 이전
제11장 기타	기밀유지, 감시 및 추적,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해외직접투자, 법적책임으로부터의 보호, 규칙과 규정 수립권한, 개정, 공식언어, 용어정의

※ ABS 법령은 지속적으로 제·개정 될 수 있으며, 최신 법령은 ABSC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S 절차**(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용)



※ 전통지식의 접근도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지나, 문서 및 절차 등을 약간 수정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인도**  
INDIA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2. 10. 9.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4. 10. 12.
ABS 적용대상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입장	유전자원 제공국
국가연락기관/연락처	국가생물다양성총국 sujata@nic.in

##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항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1. 5. 11.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2. 10. 9.
생물다양성협약 발효일	1994. 5. 19.
ABS 법령	유전자원 관련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Knowledge and Benefits Sharing Regulations, 2014)
기타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다양성법(The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li> <li>• 생물다양성 규칙(The Biological Diversity Rules, 2004)</li> <li>• 그 밖에도, 식품품종 및 농민권리보호법(2001), 대외무역(개발 및 규제)법(1992), 유해미생물, 유기체 또는 세포의 제조, 사용, 수입, 수출 및 저작에 관한 규칙(1987), 향신료법(1986), 환경(보호)법(1986), 농업 및 가공식품 수출개발 권한법(1986), 대기오염방지 및 관리법(1981), 산림보존법(1980), 인도해역법(1980), 수자원관리법(1977) 등이 관련 법안으로 언급</li> </ul>
ABS 적용대상과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li> <li>• 생물자원: 식물, 동물, 미생물, 유전물질 등 가치가 있는 것과 인간의 유전물질을 제외한 부산물</li> </ul> <p>※ 관련전통지식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p>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s and Climate Change)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CNA)	국가생물다양성총국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NBA)
담당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락기관 담당자: Ms. Sujata Arora</li> <li>• E-mail: sujata@nic.in</li> <li>• Tel: +91 11 2469-5135</li> </ul>
관련사이트	<p>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생물다양성총국: <a href="http://nbaindia.org">http://nbaindia.org</a></li> <li>• 인도운송부 상업해양처: <a href="http://mmd.gov.in:7778/home.htm">http://mmd.gov.in:7778/home.htm</a></li> </ul> <p>ABS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환경부 생물다양성 관련 법제정보: <a href="http://envfor.nic.in/division/biodiversity">http://envfor.nic.in/division/biodiversity</a></li> </ul> <p>행정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S 전자파일링(PIC 신청): <a href="http://absefiling.nic.in/NBA/login/auth">http://absefiling.nic.in/NBA/login/auth</a></li> </ul> <p>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정보/D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생물DB현황: <a href="http://www.cmlre.gov.in/">http://www.cmlre.gov.in/</a></li> <li>• 전통지식전자도서관: <a href="http://www.tkdil.res.in">http://www.tkdil.res.in</a></li> </ul>

## ABS법 주요내용(유전자원 관련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를 위한 가이드라인(2014))

구분	내용
PIC 관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를 위한 접근</li> <li>• 상업적 이용을 위한 접근</li> </ul>
이익공유 관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적 이용을 위한 접근에 대한 이익공유</li> <li>• 상업적 이용을 위해 접근된 유전자원 판매액에 대한 이익공유</li> <li>• 연구결과와 이전에 관한 이익공유</li> <li>•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익공유</li> <li>• 연구 및 상업적 이용을 하려는 제3자에게 유전자원 및 관련 지식 이전에 대한 이익공유</li> <li>• 이익공유의 결정</li> </ul>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원에 관한 연구결과와 이전방법</li> <li>• 지식재산권 취득방법</li> <li>• 지식재산권 상업화에 따른 신청인의 의무</li> <li>• 연구 및 상업적 이용을 하려는 제3자에게 유전자원 및 관련지식의 이전방법</li> <li>• 인도연구자 및 정부기관에 의해 인도 외 지역에서 비상용으로 연구 또는 비상업적 연구를 하는 경우</li> <li>• NBA에 의해 접수된 신청서의 처리절차</li> <li>• NBA 또는 SBB의 승인 배제 사항</li> </ul>
첨부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oam A: 상업적 이용을 위한 접근 시 작성 서류</li> <li>• Foam B: 유전자원에 관한 연구결과와 이전 시 작성 서류</li> <li>• Foam C: 유전자원에 기반한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 획득 시 작성 서류</li> <li>• Foam D: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하려는 제3자에게 이전 시 작성 서류</li> </ul>

※ ABS 법령은 지속적으로 제·개정 될 수 있으며, 최신 법령은 ABSC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BS 절차



이용자

→

NBA : 유전자원이용 접근신청

※ 접근신청양식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양식	내용	수수료
1	인도의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10,000 루피
2	연구결과의 이전	5,000 루피
3	지식재산 출원	500 루피
4	이미 사용된 연구결과, 자원,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이전	10,000 루피

② 신청서를 토대로 NBA 내부 심사절차 수립 및 승인

※ NBA 심사단계  
NBA사무국에서 신청서류 접수 → 법률자문및기술부 검토 → SBB/BMCs 및 지방자치단체 검토 → ABS 전문가위원회 검토 → NBA사무국에 검토결과 회신 → NBA 의장 결재 → 승인 → 이용자에게 임시승인합의모델 제시 → 이용자 동의 및 서명 → 최종승인

③ 최종승인 된 사항은 NBA 홈페이지 공보

(신청현황정보 : <http://nbaindia.org/content/333/25/1/applicationstatus.html>)

④ 로열티 지급 절차

이용자 → NBA에 로열티 지급 및 NBA펀드에 수수료 납부 → NBA 및 NBA펀드에서 제공자에게 이익을 전달

※ 참고 : 이익공유 등급표

제품의 연간 총 출고액	이익공유 비율
10,000,000 루피 이하	0.1%
10,000,001~30,000,000 루피	0.2%
30,000,000 루피 이상	0.5%

## 관련서식(1. Form I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접근 신청서)

**서식 I**  
(규칙 제14조 참조)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접근 신청서

**파트 A**

- (i) 신청인의 서면 정보
- (ii) 성명:
- (iii) 영구 주소:
- (iv) 인도 내 연락 가능한 개인/중개인의 주소(있을 경우):
- (v) 기관 프로필(신청인이 개인일 경우는 개인 프로필), 관련된 증명 서류 부착 필요:
- (vi) 사업의 성격:
- (vii) 기관의 총 매출액(US\$):

2. 접근할 생물자원과 그 성격 그리고 관련 지식에 대한 구체적이며 자세한 정보
  - a) 이용될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일반명(학명):
  - b) 해당 생물자원의 지리적 위치:
  - c) 전통지식에 대한 설명/성격(구술/문서):
  - d) 전통지식을 갖고 있는 확인된 모든 개인/지역사회:
  - e) 수집할 생물자원의 수량/용량 (기간 명시):
  - f) 명시한 생물자원 수집 기간:
  - g) 자원 선택의 권한이 있는 사람들의 성명과 명수:
  - h) 연구의 종류와 규모, 상업적 용도 및 예상되는 이익을 포함한 해당 유전자원의 이용목적:
  - i) 자원 수집에 따른 접근으로 생물다양성 어느 요소라도 위협 또는 위험에 빠뜨리는지 여부:
3. 연구 · 개발(R&D)에 참여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
4. 접근된 자원의 최초 목적지 및 연구 · 개발 활동이 예정된 장소
5. 생물자원 및 지식 접근을 통하여 얻은 지식재산권과 특허를 통해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나라에 생기게 되는 경제적 및 그 외 이익
6. 생물자원 및 지식 접근을 통하여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나라에 생기게 되는 생명공학적, 과학적, 사회적 및 그 외 이익
7. 접근된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을 통하여 인도/지역사회가 얻게 될 이익의 평가치
8. 이익공유를 위해 제안하는 방법과 계획
9. 그 외 관련된 사항

**파트 B  
선언**

나는/우리는 선언합니다:

- 해당 생물자원의 수집은 이 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며;
- 해당 생물자원의 수집은 환경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며;
- 해당 생물자원의 수집은 생태계에 어떠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며;
- 해당 생물자원의 수집은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나는/우리는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모두 정확한 사실이며 나는/우리는 부정확하고 사실이 아닌 정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서명  
이름  
직함

장소  
날짜

 **관련서식(2. Form A 생물자원에 대한 신고서)**

**서식 A**

(규칙 제2조 참조)

신청자에 의하여 사용될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자진 신고

사용되는 해당 생물자원의 일반명 : _____ 학명 : _____ 거래된 식물, 동물, 또는 부속물 : _____ 접근의 구체적 목적 : _____				
접근 장소/원산지*	수량/용량 (단위: Kg)	가격 (단위: 개당)	주생물다양성위원회 (State Biodiversity Board, SBB)	예상 구매자/이용자 (예상이 가능한 경우)

\* 이미 파악된 지방단체/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MCs)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동의서**

1. 나는 ABS 가이드라인을 읽고 해당 조건들을 이해하였으며 생물자원에 적용되는 관련 법조항들을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2. 나는 해당 목적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NBA/SBB의 동의를 얻을 것을 약속합니다.
3. 나는 NBA/SBB의 필요에 따라 관련된 자료를 NBA/SBB와 공유하고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4. 또한 나는 이 서식에 제공한 정보가 모두 정확한 사실이며 부정확한/잘못된 정보 및 고의적인 은닉이 있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서명  
거래자/회사/제조사/위임 대표자의 성명  
거래자/회사/제조자의 전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장소  
날짜

※ Form A의 경우, Form I 형식과 함께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관련서식(3. Form II. 연구결과 이전 신청서)**

**서식 II**  
(규칙 제17조 참조)

상업적 목적을 위해 연구 결과를 외국인, 외국 회사, 인도비거주자(Non Resident Indians, NRIs)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총국(NBA)에게 사전 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서

1. 신청인의 서면정보
  - i) 성명
  - ii) 주소
  - iii) 직업 프로필
  - iv) 소속된 기관 (입증을 위한 관련 문서 첨부 필요)
2. 실행한 연구결과와 세부 사항
3. 연구에 이용된 생물자원/관련된 지식의 세부 사항
4. 연구에 이용된 생물자원이 수집된 지리적 위치
5. 연구에 이용된 전통지식과 전통지식을 갖고 있는 파악된 개인/사회에 대한 세부 사항
6. 연구·개발이 행해진 기관에 대한 세부 사항
7. 연구결과가 제공되기로 예정된 개인/기관에 대한 세부 사항
8. 연구결과를 통하여 개인/기관이 받게 될 또는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생물공학적, 과학적 및 그 외의 이익에 관한 세부 사항
9. 연구결과를 제공하여 신청인이 받게 될 또는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생물공학적, 과학적 및 그 외의 이익에 관한 세부 사항
10. 연구결과와 제공의 승인을 바라는 신청인과 정보 수령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 또는 MOU에 관련한 세부 사항

**선언**

나는/우리는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모두 정확한 사실이며 나는/우리는 부정확하고 사실이 아닌 정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서명  
성명  
직위

장소  
날짜

 **관련서식(4. Form III 지식재산권 신청서)**

**서식 III**  
(규칙 제18조 참조)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국가생물다양성총국(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NBA)  
사전 승인 요청 신청서

1. 신청인의 서면정보
  - i. 성명:
  - ii. 주소:
  - iii. 직업 프로필:
  - iv. 소속된 기관(입증을 위한 관련 문서 첨부 필요):
2. IPR 취득을 원하는 발명에 대한 세부 사항
3. 발명에 이용된 생물자원/관련된 지식의 세부 사항
4. 발명에 이용된 생물자원이 수집된 지리적 위치
5. 발명에 이용된 전통지식과 전통지식을 갖고 있는 파악된 개인/지역 사회에 대한 세부 사항
6. 연구·개발이 행해진 기관에 대한 세부 사항
7. 발명으로 받게 될 또는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생물공학적, 과학적 및 그 외의 이익에 관한 세부 사항

**선언**

나는/우리는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가 정확한 사실이며 나는/우리는 부정확하고 사실이 아닌  
정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장소  
날짜

서명  
성명  
직위

 **관련서식**(5. Form IV 사용된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의 제3자 이전 신청서)

**서식 IV**  
(규칙 제19조 참조)

접근된 생물자원 및 관련된 전통지식을 제3자에게 이전을 위한 국립생물다양성기구(NBA) 사전 승인 요청 신청서

1. 신청인의 서면정보
  - i. 성명:
  - ii. 주소:
  - iii. 직업 프로필:
  - iv. 소속된 기관(입증을 위한 관련 문서 첨부 필요):
2. 접근된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세부 사항
3. 체결된 접근 계약의 세부 사항(사본 부착 필요)
4. 이익과 이미 시행된 이익공유 방법/합의에 관한 세부 사항
5. 접근된 자원/지식의 이전을 받는 제3자에 대한 서면정보
6. 제3자 이전의 목적
7. 제3자에게 접근된 생물자원과 지식의 이전으로 받게 될 또는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생물공학적, 과학적 및 그 외의 이익에 관한 세부 사항
8. 신청인과 제3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에 대한 세부 사항
9. 제3자에게 접근된 생물자원과 지식의 이전이 인도/지역사회에 가져오는 이익의 예상치
10. 제3자 이전으로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대한 방법 및 합의 사항
11. 그 외 관련된 사항

**선언**

나는/우리는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가 정확한 사실이며 나는/우리는 부정확하고 사실이 아닌 정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장소  
날짜

서명  
성명  
직위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 인도네시아

## INDONESIA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3. 9. 24.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4. 10. 12.
ABS 적용대상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입장	유전자원 제공국
국가연락기관/ 연락처	환경부/ nfpcbd@menlhk.go.id

##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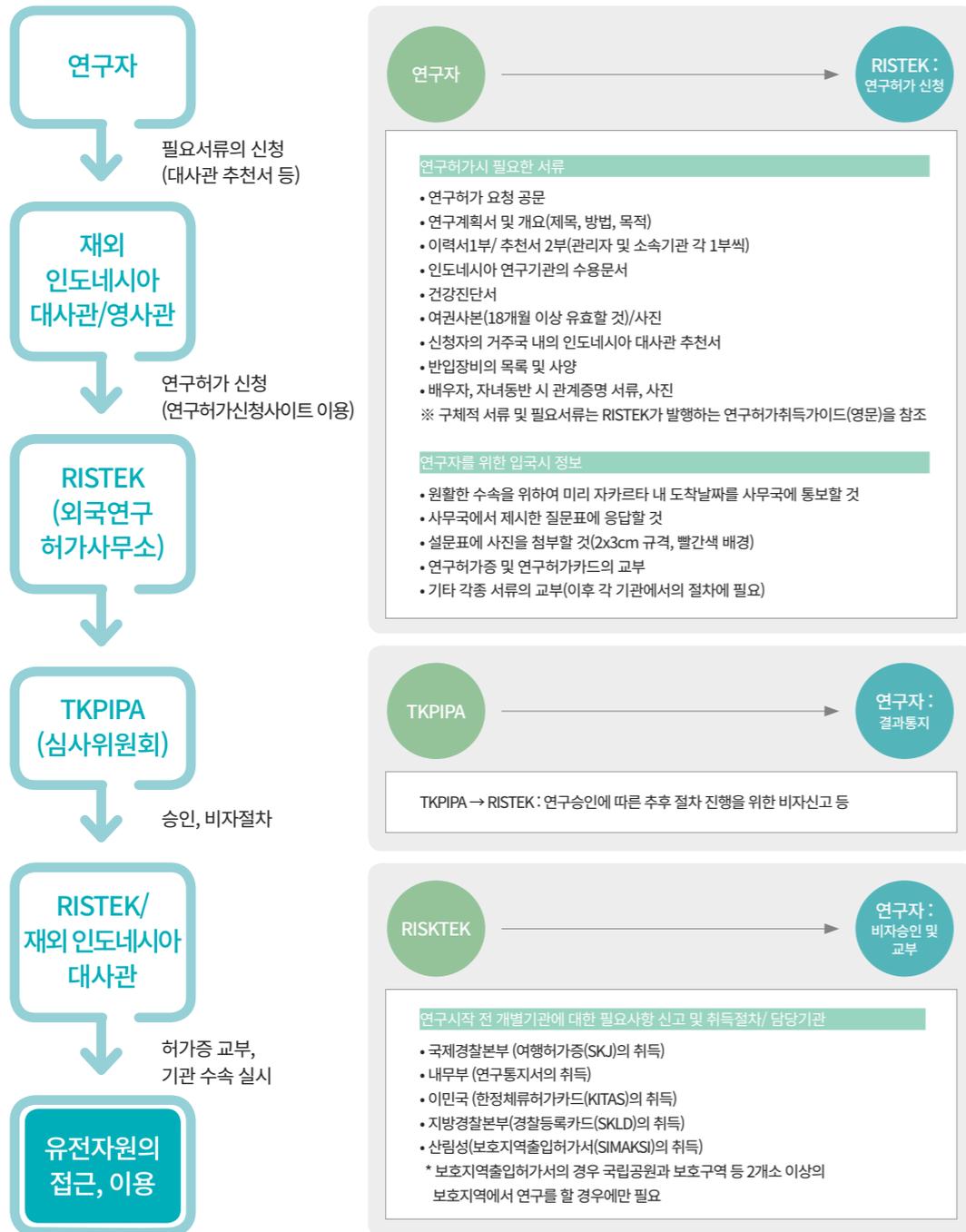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3. 9. 24.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4. 10. 12.
생물다양성협약 발효일	1994. 11. 21.
ABS 법령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관한 2013년 제11호 법률
기타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자원과 생태계보존에 관한 1990년 제5호 법률</li> <li>• 식물 재배시스템에 관한 1992년 제12호 법률</li> <li>•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에 관한 1994년 제5호 법률</li> <li>• 산림에 관한 1999년 제7호 법률</li> <li>• 식량, 농업에 관한 식물유전자원 국제협약 비준에 관한 2006년 제4호 법률</li> <li>• 환경관리 및 보호에 관한 2009년 제32호 법률 등</li> </ul>
ABS 적용대상과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li> </ul> ※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내법에 유전자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나고야의정서 상의 일반정의규정에 따릅니다.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환경부 (Natural Resources and Ecosystem Conserv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CNA)	기술 및 연구부 (MINISTRY OF RESEARCH AND TECHNOLOGY)
담당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락기관 담당자 : Mr. Bambang Hendroyono</li> <li>• E-mail : nfpcbd@menlh.go.id</li> <li>• Tel : +62 21 573-4818</li> </ul>
관련사이트	관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환경부 : <a href="http://www.menlh.go.id/">http://www.menlh.go.id/</a></li> <li>•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 <a href="http://www.kkp.go.id/en/">http://www.kkp.go.id/en/</a></li> </ul> 행정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업적목적의 연구허가 신청 : <a href="http://frp.ristek.go.id">http://frp.ristek.go.id</a></li> </ul>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정보/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자원 DB현황(인도네시아 생물다양성 연구센터) : <a href="http://www.ibrcbali.org/">http://www.ibrcbali.org/</a></li> </ul>

## ABS 관련 법령 주요내용

구분	내용
나고야의정서 비준법	•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관한 선언적 내용 규정
천연자원과 생태계 보존에 관한 1990년 제5호 법률	•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활용의 원칙 제시
식물재배시스템에 관한 1992년 제12호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물유전자원 및 우량종의 탐사와 수집에 관한 사항</li> <li>• 벌칙 : 허가받지 않은 탐사 및 수집의 경우 12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루피아의 벌금</li> </ul>
환경관리에 관한 1997년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중앙·지방정부의 권한과 의무, 환경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역할 및 천연자원의 보존, 균형있는 발전에 대한 목표 제시</li> <li>• 유전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li> </ul>
산림에 관한 1999년 제41호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자원의 활용 및 관리, 보호</li> <li>• 산림지역의 관습법 공동체의 산림관리 및 활용에 대한 권한 및 참여보장, 기타 산림관련 규정</li> </ul>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2000년 제29호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물품종보호를 위한 보호권의 취득, 및 이용</li> <li>• 식물다양성보호를 위한 특허신청과 특허권자의 권리</li> </ul>
축산 및 동물보건에 관한 2009년 제18호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원에 대한 권한</li> <li>• 유전자원 반입 및 반출, 이전에 대한 사항</li> </ul>

※ ABS 법령은 지속적으로 제·개정 될 수 있으며, 최신 법령은 ABSC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S 절차**(연구자의 유전자원 접근, 이용 절차)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일본**  
JAPAN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7. 5. 22.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7. 8. 20.
ABS 적용대상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입장	유전자원 이용국
국가연락기관/연락처	환경성 seishu.okuda@mofa.go.jp

##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항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7. 5. 22.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7. 8. 20.
생물다양성협약 발효일	1993. 12. 29.
ABS 법령	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2017)
기타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물다양성에 관한 기본법</li> <li>생물다양성 지역협력 촉진법</li> <li>이용자를 위한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지침</li> </ul>
ABS 적용대상과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적용대상</b>: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li> <li><b>유전자원</b>: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갖는 식물, 동물, 미생물 등에서 유래한 소재에서 나온 현실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것</li> <li><b>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b>: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가진 원주민 사회 및 지역사회에서 전통, 풍습, 문화 등에서 기인하고 옛날부터 이용되는 특유의 지식 중 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것</li> </ul>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환경성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CNA)	환경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 경제산업성
담당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연락기관 담당자: Mr. Seishu Okuda</li> <li>E-mail: seishu.okuda@mofa.go.jp / kazuko.takabatake@mofa.go.jp / naoki_nakayama@env.go.jp / issei_nakahara@env.go.jp</li> <li>Tel: +81 3 5501 8245</li> <li>Fax: +81 3 5501 8000</li> </ul>
관련사이트	<p><b>관련기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성 ABS정보: <a href="http://www.env.go.jp/nature/biodic/abs/index.html">http://www.env.go.jp/nature/biodic/abs/index.html</a></li> <li>경제무역산업성: <a href="http://www.meti.go.jp/e/index.html">http://www.meti.go.jp/e/index.html</a></li> <li>문부과학성: <a href="http://www.mext.go.jp/">http://www.mext.go.jp/</a></li> </ul> <p><b>ABS 법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환경 관련 법제: <a href="http://www.env.go.jp/en/laws/">http://www.env.go.jp/en/laws/</a></li> </ul> <p><b>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정보/DB</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생물다양성정보: <a href="http://www.biodic.go.jp/index_e.html">http://www.biodic.go.jp/index_e.html</a></li> </ul> <p><b>기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바이오산업협회: <a href="http://www.mabs.jp/">http://www.mabs.jp/</a></li> <li>국외생물유전자원 이용촉진을 위한 종합창구: <a href="http://www.maff.go.jp/j/kanbo/kankyo/seisaku/s_win_abs.html">http://www.maff.go.jp/j/kanbo/kankyo/seisaku/s_win_abs.html</a></li> <li>ABS학술연구팀: <a href="http://nig-chizai.sakura.ne.jp/abs_tft/">http://nig-chizai.sakura.ne.jp/abs_tft/</a></li> <li>국가생물자원프로젝트 정보공개: <a href="http://www.nbrp.jp/">http://www.nbrp.jp/</a></li> <li>일본 바이오자원센터(BRC): <a href="http://ja.brc.riken.jp/">http://ja.brc.riken.jp/</a></li> <li>독립행정법인 생명공학센터: <a href="http://www.nite.go.jp/nbrc/index.html">http://www.nite.go.jp/nbrc/index.html</a></li> <li>유체물 관리센터: <a href="https://mmc-u.jp/">https://mmc-u.jp/</a></li> </ul>

## ABS법 주요내용 (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제2장 제공국 법령준수 촉진에 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전자원의 적법한 취득에 관한 신고</li> <li>취득자에 의한 신고, 사람의 건강에 관한 긴급사태, 수입자 등에 의한 신고, 환경장관에 의한 국제클리어링하우스의 정보의 제공, 환경장관에 의한 정보의 주지</li> <li>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의 적법한 취득에 관한 신고</li> <li>신고의 장려</li> <li>제공국 법령위반의 신청에 관한 협력</li> <li>유전자원 이용관련 정보제공의 요구 등</li> <li>유전자원 이용관련 정보제공의 요구, 유전자원 이용관련 정보의 활용</li> </ul>
제3장 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배분</li> <li>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의 총당</li> <li>체결하는 계약의 규정을 통한 해당 계약의 실시에 관한 정보 공유</li> <li>계약조항의 모형의 작성 등</li> <li>행동규범, 지침 및 모범관행 또는 기준</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에 있는 유전자원 취득 기회의 제공</li> <li>국내에서의 유전자원의 취득에 관한 서류 발급</li> <li>주무장관</li> <li>부칙</li> </ul>
첨부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식1: 유전자원 취득에 관한 신고서</li> <li>양식2: 유전자원 취득에 관한 허가증 등에 기초한 신고서</li> <li>양식3: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신고서</li> </ul>

※ 일본의 ABS법은 이용국의 관점에서 내국인(일본인이) 제공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ABS 법령은 지속적으로 제·개정 될 수 있으며, 최신 법령은 ABSC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BS 절차

- 일본은 유전자원 이용자 입장에서의 입법을 하고 있어, 일본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의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과 같이 민사상 일반 계약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일본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의 사전통고승인(PIC)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Q: 일본이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입장이 되는 경우 PIC를 발행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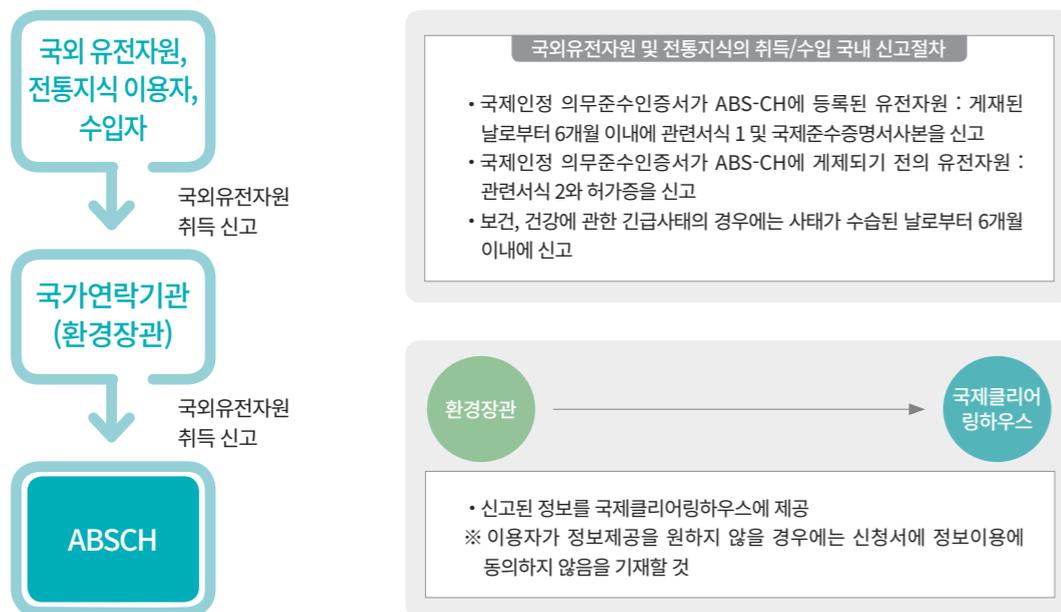
A: 「환경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ABS와 관련한 사항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검토되고 있지만, 제공자의 입장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제공국으로서의 국내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제공국으로서의 국내조치를 검토할 경우, 「자연공원보호법」 등의 기존 법령을 개정하고, 자연공원의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에만 PIC의 취득을 의무화하며, 또한 MAT는 모든 소유자 사이에 실행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제도가 실행된다면, PIC의 발급기관은 환경성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일본 ABS학술대책팀 FAQ참조

※ 참고

### ● 국외 유전자원의 취득 시 국내신고 절차



##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 중국 CHINA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6. 6. 8.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6. 9. 6.
ABS 적용대상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파생물
입장	유전자원 제공국
국가연락기관/연락처	환경보호부 cai.lei@mep.gov.cn

##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항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6. 6. 8.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6. 9. 6.
생물다양성협약 발효일	1993. 12. 19.
ABS 법령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 초안(2017)
기타 관련 법령	환경보호법, 삼림법, 야생동물보호법, 어업법, 종자법, 축목법, 특허법, 중의약법, 야생식물자원보호조례 등
ABS 적용대상과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적용대상</b> : 생물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파생물</li> <li>• <b>생물유전자원</b> :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기타에서 유래한 생물유전자원의 기능적 단위를 갖는 재료, 파생물 및 그것이 생성한 정보자료(인체유전자원은 제외)</li> <li>• <b>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b> : 각 민족인민과 지방사회가 장기간 전통생활활동을 실천하는 가운데 창조·전승 및 발전시킨 것으로 생물유전자원보호에 이로우며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지식·혁신 및 기술</li> <li>• <b>파생물</b> : 생물유전자원의 유전발현 또는 신진대사작용으로 생성된 생물화학물질, 그리고 직접 천연산물이 구조를 변형한 유사물 또는 생물유전자원 및 그 정보를 인공합성한 화합물</li> </ul>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국무원 산하 환경보호부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CNA)	국가환경보호총국 (State Environment Protection Administration: SEPA)
담당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락기관 담당자 : Ms. Cai Lei</li> <li>• E-mail : cai.lei@mep.gov.cn</li> <li>• Tel : +86 10 6655 6328</li> <li>• FAX : +86 10 6655 6329</li> </ul>
관련사이트	<b>관련기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호부 : <a href="http://www.mep.gov.cn/">http://www.mep.gov.cn/</a></li> <li>• 환경보호부 정보센터 : <a href="http://cncbc.mep.gov.cn/">http://cncbc.mep.gov.cn/</a></li> <li>• 중국국가해양부 : <a href="http://www.soa.gov.cn/soa/index.htm">http://www.soa.gov.cn/soa/index.htm</a></li> <li>• 중국농업부 : <a href="http://english.agri.gov.cn/">http://english.agri.gov.cn/</a></li> </ul> <b>기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다양성 CHM : <a href="http://www.biodiv.gov.cn/">http://www.biodiv.gov.cn/</a></li> <li>•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a href="http://www.biosafety.gov.cn">http://www.biosafety.gov.cn</a></li> <li>• 중국 지구환경기금 : <a href="http://www.gefchina.org.cn/">http://www.gefchina.org.cn/</a></li> </ul>

## ABS법 주요내용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 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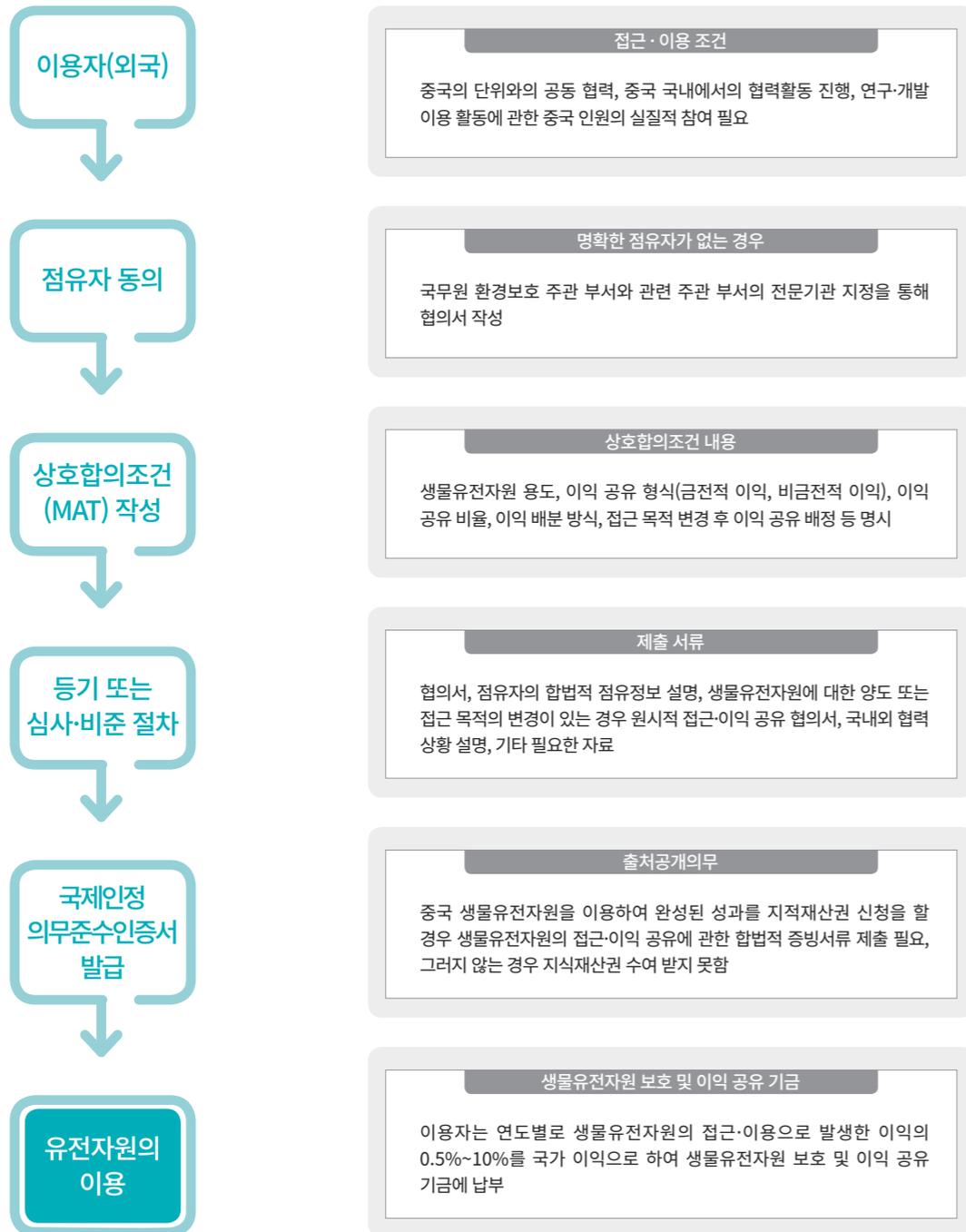
※ 중국의 이익공유 절차는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된 조례 초안을 토대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10조)	입법목적, 적용범위, 기본원칙, 조사 및 보호계획, 전통지식보호, 전통지식등록, 전통지식단체관리, 과학연구·교육 및 홍보, 대중참여, 금지·제한성 활동
제2장 감독관리 (제11조~제17조)	관리책임, 협조체제 및 자문체제, 정보교환체제, 점검기관, 감독검사제도, 법집행점검조치, 신용상설명제도
제3장 생물유전자원 접근 (제18조~제30조)	접근의 원칙, 내국인의 접근, 외국기관의 접근, 신청자료, 신청의 등록·공고 및 이의, 심사승인기한, 접근의 금지성 조항, 생물유전자원국제인증서, 접근목적변경, 이미 취득한 유전자원의 양도, 접근인의 서류작성 의무, 출처공개의무, 예외절차
제4장 생물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제31조~제35조)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 이익의 유형, 생물유전자원보호 및 이익공유 기금, 관련주체의 이익보호, 집체관리조직의 이익의 재분배
제5장 생물유전자원의 국외반출 관리 (제36조~제38조)	국외반출허가, 국외반출검역검사, 보고의무
제6장 책임 (제39조~제44조)	행정처벌, 가중처벌, 국외반출처벌, 주관부서책임, 집체관리조직책임, 민사책임·분쟁해결 및 공익소송, 형사책임
제7장 부칙 (제46조~제48조)	경과규정, 실시세칙, 시행일자

※ ABS 법령은 지속적으로 제·개정 될 수 있으며, 최신 법령은 ABSC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BS 절차

※중국의 이익공유 절차는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된 조례 초안을 토대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 캄보디아 CAMBODIA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5. 1. 19.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5. 4. 19.
ABS 적용대상	유전자원
입장	유전자원 제공국
국가연락기관/ 연락처	환경부 국가지속가능 개발협의회 somalychan.ca@gmail.com

##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항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5. 1. 19.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5. 4. 19
생물다양성협약 발효일	1995. 2. 9.
ABS 법령	없음
기타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1996)</li> <li>• 토지법(Land Law, 2001)</li> <li>• 산림법(Forestry Law, 2003)</li> <li>• 수산업법(Fisheries Law, 2006)</li> <li>• 수자원관리법(Water Resources Management Law, 2007)</li> <li>• 종자관리 및 식물육종가의 권리에 관한 법(Law on Crop Seed Management and Rights of Plant Breeders, 2008)</li> <li>• 보호구역법(Protected Areas Law, 2008)</li> </ul>
ABS 적용대상과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 유전자원</li> <li>※ 캄보디아의 경우 국내법에 유전자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나고야의정서 상의 일반정의규정에 따릅니다.</li> </ul>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환경부 국가지속가능개발협의회 (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inistry of Environment)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CNA)	환경부 국가지속가능개발협의회 (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inistry of Environment)
담당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락기관 담당자 : Ms. Somaly Chan</li> <li>• E-mail : somalychan.ca@gmail.com</li> <li>• Tel : +855 23 6445 222</li> <li>• FAX : +855 23 721 073</li> </ul>
관련사이트	관련기관 • 캄보디아 환경부 : <a href="http://www.moe.gov.kh/">http://www.moe.gov.kh/</a>

## ABS 관련 법령 주요내용

구분	내용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자원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존, 개발, 관리 및 사용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환경의 보호와 공공의 건강을 보호법적으로 함</li> <li>• 산림, 산림제품, 야생동물, 어류 및 수산자원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사용될 것을 요구</li> <li>•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환경부가 개입할 수 있으며, 자원의 개발이 환경피해를 입힐 경우 환경부의 감독 실시</li> </ul>
산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산림구역의 산림을 지역 주민이 관습적 사용하는 데 일정한 제한이 없으나, 제3자에 의한 산림자원의 사용에 있어서는 별도의 허가와 로얄티, 프리미엄이 부과됨</li> <li>• 모든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임을 선언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어떠한 밀렵이나 유통, 소유, 무역, 수출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다만 동물원이나 관습적인 사용만이 일정한 관계 당국의 허가 아래 허용됨</li> </ul>
수출입허가 산림 및 비목재 임산물에 관한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자원 중 수출이 가능한 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을 원재료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원재료의 수출 시 상무부로부터의 수출자격과 외무부 장관에 의해 허가비자를 받아야 함</li> <li>• 수출 금지물품을 또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별도의 지역적, 국제적, 국가적, 사회 경제적 요구가 없는 이상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li> </ul>
공동체 산림관리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목재산림제품을 수확, 교환, 판매함에 있어, 해당 작물에 로얄티나 프리미엄이 부과됨</li> <li>• 산림제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로얄티와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산림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별도의 대장에 기초하여 부과됨</li> <li>• 인근 주민으로 공동체산림구역에 공동체를 구성하고,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li> </ul>

※ ABS 법령은 지속적으로 제·개정 될 수 있으며, 최신 법령은 ABSC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S 절차



<p><b>국내법 및 관련 기관 확인</b></p> <p>[캄보디아 국가연락기관] 환경부 국가지속가능개발협의회 (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inistry of Environment)</p>
<p><b>유전자원의 소유권자와 승인권자 확인</b></p> <p>※ 캄보디아의 경우 ABS 국내법이 없으므로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p> <p>예시) 수출입허가 산림 및 비목재 임산물에 관한 시행령: 산림자원 물질의 경우 원재료의 수출 시 상무부로부터 수출자격 및 외무부에 의한 허가비자 필요 산림법: 야생동물의 원칙적 수출입금지, 정부 허가 하에 일부 사용 가능</p>
<p><b>물질이전계약 체결</b></p> <p>※ 로열티, 프리미엄 등의 부과는 개별법령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p> <p>예시) 공동체 산림관리 시행령: 비목재산림제품을 수확, 교환, 판매함에 있어 해당작물에 대한 로열티나 프리미엄이 부과됨</p>
<p><b>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 및 의무준수</b></p>

※ 캄보디아는 ABS 국내법이 아직 없는 관계로 나고야의정서 일반절차 또는 기존과 같이 민사상 일반 계약형태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 시 국가연락기관을 통하여 개별적인 절차의 확인이 필요 필요합니다.



**필리핀**  
PHILIPPINES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5. 9. 29.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5. 12. 28.
ABS 적용대상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입장	유전자원 제공국
국가연락기관/연락처	환경자연자원부 pawbdir@yahoo.com

##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항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5. 9. 29.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5. 12. 28.
생물다양성협약 발효일	1994. 1. 6.
ABS 법령	없음
기타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통합보호지역제도법</li> <li>• 야생생물자원 보전보호법</li> <li>• 원주민권리법</li> <li>• 필리핀 바이오프로스펙팅 활동지침</li> </ul>
ABS 적용대상과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li> <li>※ 필리핀의 경우 국내법에 유전자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나고야의정서 상의 일반정의규정에 따릅니다.</li> </ul>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환경자연자원부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CNA)	생물유전자원에 관한 기관간위원회 (Inter-Agency Committee on Biological and Genetic Resources through the Protected Areas and Wildlife Bureau)
담당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락기관 담당자 : Ms. Theresa Mundita S. Lim</li> <li>• E-mail : pawbdir@yahoo.com / bmb@bmb.gov.ph munditalim@yahoo.com</li> <li>• Tel : +63917803377</li> <li>• FaX : +632 9204486</li> </ul>
관련사이트	<p>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부 : <a href="http://www.da.gov.ph/">http://www.da.gov.ph/</a></li> <li>• 환경천연자원부 : <a href="http://www.denr.gov.ph/">http://www.denr.gov.ph/</a></li> </ul> <p>ABS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환경관련 법제정보 : <a href="http://www.denr.gov.ph/laws-and-policies.html">http://www.denr.gov.ph/laws-and-policies.html</a></li> </ul>

## ABS 관련법령 주요내용

법령	내용
국립통합보전지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귀종, 위험 동식물 서식지 및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공중지역의 보호목적</li> <li>• 필리핀 국내보호지역 확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ul>
야생생물자원 보전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생생물자원 및 서식지의 지속가능한 보전</li> <li>• 생물자원에 관한 접근 규제</li> <li>• 비상업적 과학연구에 관한 사항</li> <li>• 생물자원 접근 및 사전승인제도</li> </ul>
필리핀 바이오프로스펙팅 활동지침(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목적의 생물자원의 접근 통제 절차의 포괄적 규정</li> <li>• 상업목적 생물자원의 접근 시 허가신청절차</li> </ul>
원주민권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주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의 보호</li> <li>•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에 관한 규정</li> <li>• 원주민의 법적 지위 확보</li> </ul>

※ ABS 법령은 지속적으로 제·개정 될 수 있으며, 최신 법령은 ABSC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BS 절차(바이오프로스펙팅)

